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2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천혜선 외

2023. 12

연구기관 :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연구기관 : 유한회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 천혜선
참여연구원 : 윤금낭
이현주
김나은

목 차

요 약 문 ····· 12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증가 ····· 1

나. ‘잊힐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확대 ····· 5

2. 연구 목표 ····· 6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7

제2장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개념 및 보호범위 ····· 8

제1절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의 보호범위 ····· 8

1.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범위 ····· 8

2.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삭제 대상 정보 범위 ····· 10

제2절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 체계 ····· 13

1. 정보유형별 지원절차 ····· 13

2.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 15

3.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정보 삭제 ····· 18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대상 삭제지원 제도 ····· 19

제3장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 분석 ····· 24

제1절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관련 제도 운영 해외 사례 ····· 24

1. 영국 ····· 24

2. 호주 ····· 28

3. 미국 ····· 33
4. 시사점 ····· 34
제2절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 관련 제도 운영 현황 ···· 37
1.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관련 규정 ····· 37
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37
나. 구글(유튜브) ····· 43
다. 트위치 ····· 45
라. X(트위터) ····· 50
2.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관련 규정 ····· 54
가. 네이버 ····· 54
나. 카카오 ····· 56
다. 디시인사이드 ····· 59
3. 시사점 ····· 60

제4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 63
제1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회 추진 현황 ····· 63
1. 협의회 구성 및 추진동향 ····· 63
2. 협의회 논의 과제 현황 ····· 64
제2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67
1.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강화 방안 ····· 67
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 67
나. 디지털성범죄 긴급심의의 법률적 근거 강화 ····· 71
2.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방안 ····· 73
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 실효화 ····· 73
나. 성범죄자의 SNS 사용 및 계정 개설 금지 지원 ····· 78
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 83

라.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의무 강화 ····· 89
마. 디지털성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양형기준 수립 ····· 90
바. 디지털성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 ····· 97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 101
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정보 선삭제·후소명 ····· 101
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 ····· 105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강화 방안 ····· 107
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체용어 발굴 및 확산 ····· 107
나. 방송보도·영상재현 윤리원칙 수립 및 확산 ····· 114

참 고 문 헌 ····· 118

표 목 차

<표 1-1> 디지털성범죄 피해접수 유형별 현황(단위:건) ····· 2
<표 1-2> 삭제지원 피해촬영물에 동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현황(단위:건) ····· 4
<표 2-1> 성범죄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및 규정 현황 ····· 12
<표 2-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등 ··· 13
<표 2-3>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범위 · 14
<표 2-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 15
<표 2-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 ····· 16
<표 2-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6 ····· 17
<표 2-7>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6제1항 ····· 18
<표 2-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19
<표 2-9>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20
<표 2-10>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 21
<표 2-1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현황(단위:건) ····· 22
<표 2-12>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요청자의 피해인지 경로 현황(단위:명) ····· 23
<표 2-13> 지원근거별 삭제지원 건수(단위:건) ····· 23
<표 3-1>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권이 해당되는 경우 ·· 27
<표 3-2>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요청권 거부 ··· 27
<표 3-3> 호주 온라인안전국의 사이버괴롭힘 신고메뉴의 항목 ····· 30
<표 3-4> 호주 온라인안전국의 사이버괴롭힘의 예시 ····· 30
<표 3-5> X(트위터)의 게재제한이 가능한 콘텐츠 유형과 예시 ····· 50
<표 4-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범부처 추진실적 ····· 65
<표 4-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과제 ····· 66
<표 4-3>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포상금) ····· 67
<표 4-4>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현황 ····· 68

<표 4-5>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범죄와 지급규모 ····· 69
<표 4-6>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70
<표 4-7> 「방통위 설치법」 제22조제4항 개정안 ····· 72
<표 4-8> 「방통위 설치법」 제22조제4항 개정안 ····· 72
<표 4-9>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및 시행령 74
<표 4-10>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023533) 신구조문 대조표 ····· 76
<표 4-11>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017) 신구조문 대조표 ····· 77
<표 4-12>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성범죄자의 이용 제한관련 규정 현황 ····· 79
<표 4-13>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성범죄자의 상업적SNS웹사이트 사용금지 법조항 80
<표 4-14>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간등에의 취업제한 등) ····· 84
<표 4-15>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 85
<표 4-1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시 제재 규정 ····· 86
<표 4-17>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 87
<표 4-18>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개정안 ····· 88
<표 4-19> 불법촬영물 의심 영상의 방심위 전달 후 삭제를 위한 고시 개정안 ····· 90
<표 4-20>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정형 기준 ····· 91
<표 4-21>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표 ····· 95
<표 4-22>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 96
<표 4-23>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98
<표 4-24> 해외의 영장없는 압수수색 허용여부 ····· 100
<표 4-2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정보의 삭제요청 등) ····· 102
<표 4-2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 103
<표 4-27>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개정안 ····· 104
<표 4-28>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체용어 발굴 ····· 107
<표 4-29> 「성폭력처벌법」 상 디지털성범죄 관련 표현 현황 ····· 108
<표 4-30>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 109
<표 4-31>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성폭력처벌법」 상 '성적수치심'등 용어 개정안 ·· 112
<표 4-32> 성범죄 피해관련 용어 대체가 필요한 법령 범위 ····· 113

<표 4-3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 114
<표 4-34>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세부권고 기준 중 '잊힐 권리'관련 주요 내용 ·· 114
<표 4-35>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체용어 발굴 및 확산 방안 ····· 116

그 림 목 차

[그림 1-1] 디지털성범죄 목격 경험률 ····· 1
[그림 1-2] 디지털성범죄 피해접수 유형별 현황(단위:건) ····· 2
[그림 2-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업무 흐름도 ····· 22
[그림 3-1] 메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2차 가해 콘텐츠에 대한 게재 제한 조항 ····· 38
[그림 3-2] 메타의 성적 묘사 없는 2차 가해 콘텐츠에 대한 제한 규정 ····· 39
[그림 3-3] 메타의 성적 콘텐츠 삭제 예외 대상 ····· 40
[그림 3-4] 인스타그램의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안내 ····· 41
[그림 3-5] 인스타그램의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안내 ····· 43
[그림 3-6] 페이스북의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신고양식 ····· 43
[그림 3-7] 트위치 이용약관상의 금지행위 규정 ····· 46
[그림 3-8] 트위치의 범죄자 이용계정 제한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규정 ····· 48
[그림 3-9] 트위치의 부적합 ID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용 ····· 49
[그림 3-10] X의 민감한 콘텐츠 등에 대한 신고 메뉴 ····· 52
[그림 3-11] 카카오가 안내한 신고접수 처리절차 ····· 58
[그림 3-12] 디시인사이드의 콘텐츠 관련 이용자 신고양식 ····· 58
[그림 3-13] 디시인사이드의 게시물 삭제 또는 이용제한 규정 ····· 59
[그림 4-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회 구성 ····· 64
[그림 4-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 68
[그림 4-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를 위한 민간 홍보 활동 ····· 71
[그림 4-4]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절차 ····· 82
[그림 4-5] 성범죄자 범죄경력정보 등록·공개·고지 업무 프로세스 ····· 84

요 약 문

1. 제 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ㅇ (사회적 필요성)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정보에 대한 보호,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등 예방, 보호, 피해회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합성·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 등과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가능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빠른 확산이 이뤄지고 있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9)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재유포 위험에 의한 좌절감,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비방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 등 반복되는 유포와 2차 가해 피해 가능성에 노출됨
- 이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피해회복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정책적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부처간·민관 협의회가 출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함

- 2023년 3월에 민간 플랫폼 사업자까지 참여하는「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으며, 2022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협력사항 논의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 부처협의를 통해 과제 추가, 삭제, 내용 조정, 구체화 등이 예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의 발굴 및 타부처와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구체화를 지원하는 정책연구가 필요함

ㅇ (목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발굴을 목표로 함

-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물 및 개인정보에 대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분류체계 등에 대한 비교 분석함

-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인터넷사업자의 신고접수 강화 필요성 및 임시조치 요청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피해자 인적정보 신고 및 삭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신규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잊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발굴함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ㅇ (구성과 범위) 본 연구는 ① 서론, ②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개념 및 보호범위, ③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 분석, ④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1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함

- 제2장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개념 및 보호범위를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범위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삭제

대상 정보 범위,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 체계현황 등을 분석함

- 제3장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해외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제4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제1절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회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제2절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 제4장 제2절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①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강화 방안, ②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방안,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④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강화 방안 등의 4가지 차원에서 추진과제를 발굴함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개념 및 보호범위

○ (보호대상 정보범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관련 정보(이하 '인적정보')는 유출 및 유포방지 대상 정보로 규정됨

- 현행 법령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언론/방송/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법령 자체로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보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삭제대상 정보범위)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 정보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 등 피해영상에 대한 처리절차

와 피해자의 인적정보에 대한 처리절차는 일부 상이함

- 피해자의 초상이나 신체노출 정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으로 분류되어「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에 따른 신속삭제 및 필터링 조치 대상임
- 신체, 초상, 음성의 노출이 없는 비 영상정보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시조치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정보로 분류되며, 디지털성범죄정보 긴급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 대상으로 처리됨

ㅇ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피해자의 초상이나 신체가 노출된 불법촬영물의 삭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근거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삭제요청이 가능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세·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함
-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이들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의 불법촬영물 등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검색결과 송출제한 조치를 해야 함
- 이외에도,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수 없도록 게재하려는 정보를 비교·식별하여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동법 제22조의6은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강제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디지털성범죄정보 긴급심의) 불법촬영물 등 이외의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

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수받아 긴급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미성년자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 일반적인 개인정보나 명예훼손 정보와 달리 제3자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히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 신속심의를 시행하고 있음
- 심의대상 정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적 불법촬영정보, 허위영상정보, 피해자 관련 신상정보 등이 포함됨

○ (임시조치) 불법촬영물 등 영상정보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정보의 삭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 사생활 침해 정보와 동일하게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제도) 「성폭력방지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함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촬영물 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등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 그 밖에 촬영물 등 삭제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촬영물 등 삭제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피해자의 피해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게 됨

-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등임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의 요청이 있는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없이도 삭제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는 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피해자 지원센터 현황)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는 촬영물 등 삭제지원을 위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업무를 위임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 발표에 따라 상담 및 피해 촬영물 무료 삭제지원, 피해자지원기관 연계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 분석

1)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관련 제도 운영 해외 사례

○ (불법촬영물 삭제) 해외 주요국은 아동성착취가 아닌 경우에는 긴급심의 삭제제도가 없으며, 사업자 자율과 법원 명령에 따라 삭제함

○ (피해자 인적정보) 일반 개인정보·사생활침해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삭제명령이 있는 호주도 48시간 유예 및 24시간 강제 등 시간 지연이 있음

○ (신고의무) 미국에서는 아동성착취물에 한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의

무가 부여되는 등 책임 부여

2)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 관련 제도 운영 현황

○ (불법촬영물 삭제) 글로벌사업자는 미국법과 국내법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자는 국내법에 따라 삭제 및 접근을 제한함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조치의무사업자들은 성범죄피해 영상의 삭제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령에서 정한 삭제요청기관 이외의 신고접수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대리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는 일반 명예훼손이나 괴롭힘 콘텐츠와 유사 절차를 거침

○ (인적정보 삭제) 국내사업자는 법령의 임시조치에 따라 삭제, 일부 글로벌사업자는 당사자의 신고에 따라 삭제가능, 그 외의 사업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과 동일 취급

- 메타/구글 등 일부 사업자는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신고에 기반해서 삭제할 수 있으나, 피해자, 대리인,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등의 자격있는 신고에만 대응함
-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나 명예훼손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져, 신속한 삭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성범죄자 이용 제한) 재범률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에 따라 일부 글로벌사업자(메타)는 유죄확정받은 성범죄자의 이용을 금하나, 대부분은 서비스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한해서 이용을 제한함

○ (약관·커뮤니티 규정) 글로벌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는 약관 및 커뮤니티 규

정에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관리 기준이 공개되지 않음

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1)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강화 방안

(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 (현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및 낮은 포상금(최대 100만 원)으로 인해 미활성화되어 있으며, 현행 포상금 지급 상한이 영리 목적 유통 등의 경우에도 30만 원, 성매매의 경우 70만 원, 강간 등 성폭력은 100만 원 등으로 매우 제한적임

- 더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를 확인하고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청소년성보호법제11호제5항에 따른 소지 · 시청한 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고가 어려운 상황임

○ (해결방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상한을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홍보를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효화

-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단순 목격자가 해당 영상물의 유통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제11호제5항에 따른 소지 · 시청한 자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 규정 마련

(나) 디지털성범죄 긴급심의의 법률적 근거 강화

○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의 긴급 심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제24조의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 등에 대한 긴급심의에 대한 근거 부재

ㅇ (해결방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제24조의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 등에 대한 서면심의·의결의 법률적 근거 마련

2)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방안

(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 실효화

ㅇ (현황)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상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 정보에 대한 요청 권한 규정 미비로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가 어려움

ㅇ (해결방안) 구상권의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①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방안을 발굴하고, ② 성폭력 방지법에 행위자의 정보조회 및 처리에 관한 권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상금액 산출방안 발굴: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에 대한 산정방안 연구 실시 및 구상금액 산출기준 및 방안 마련
- ② 성폭력 방지법상 정보조회 및 처리에 관한 권한 규정 마련: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을 설치하고, 구상권 청구의 권한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담당하는 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위임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나) 성범죄자의 SNS 사용 및 계정 개설 금지 지원

ㅇ (현황) 일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성범죄자 등의 인터넷남용을 제한하는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성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의 인터넷 이용 제한을 위한 법률 (Keeping the Internet

Devoid of Sexual Predators Act of 2008: 일명 KIDS Act)'에 따라 성범죄 등록대상자의 인터넷 식별부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SNS사업자와 공유하고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으로 인해 언론보도에서 가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법원 판결물 검색 사이트 링크나 사건번호를 제공해도 본인인증 등의 복잡한 접근 절차로 인해 해외사업자들의 범죄자 실명 확인이 활성화되지 않음

ㅇ (해결방안) 주요 SNS사업자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성범죄자 식별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성범죄자의 계정 비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

- 1안) 해외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또는 휴대폰 실명 확인 없이도 성범죄 판결문을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
  - 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사이트의 로그인 시스템 개선으로 성범죄 판결문의 URL로 접근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실명확인 없는 접근을 허용하거나,
  - 조치의무사업자 등 자격있는 사업자 전용 로그인 ID를 제공하여 판결문 확인의 편의성을 제공함
- 2안) 성범죄자의 인터넷 식별자 등록 의무화 및 정보 공유
  -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알림e'에 성범죄자의 인터넷식별정보(이메일, 인터넷 접속IP, 주요 SNS의 ID 등) 등록을 의무화하고,
  - 법무부가 인터넷식별정보를 주요 SNS사업자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함

(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ㅇ (현황) 현재 국내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ㅇ (해결방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가 있는 일일 이용자수 및 매출액 기준 일정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로의 취업을 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26호 신설)

(라)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의무 강화

ㅇ (현황) 현행법령에는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영상 및 필터링 검출 영상의 삭제만을 의무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영상물과 변형물 유통현황에 대한 파악에 한계가 있음

- 국내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의심되는 영상 및 정보에 대해서 NCMEC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ㅇ (해결방안)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조치의무사업자)에게 삭제요청을 받은 신고영상 및 필터링 검출 영상을 바로 삭제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에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삭제요청을 받은 신고영상 및 필터링 검출 영상을 바로 삭제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달을 의무화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모니터링 역량 강화

(마) 디지털성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양형기준 수립

ㅇ (현황)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를 불법촬영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처벌하는 한계가 있고, 영리목적의 반포 관련 기본양형의 하한이 2년6개월로 지정되어 2차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등의 경미한 처벌 우려가 있음

○ (해결방안)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의 법정형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 관련 성범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반포와 영리목적의 반포 관련 기본 양형 하한선 상향 등을 통해 합의부 재판에 배속함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엄중 처벌함
-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관련 영리 목적의 반포는 현행 2년6개월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관련 영리목적의 반포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집행유예 등으로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함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기본양형 하한선 상향(현행 6개월→ 1년)하여, 허위영상물의 편집과 반포의 경우에도 합의부 재판에 할당되도록 함
- 단독이나 합의부에 따라 재판과정에 특정인에게 유불 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민의 법감정상 사법부에 대한 판결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고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관대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합의부 재판 배속이 필요함

(바) 디지털성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

○ (현황) 「형사소송법」상 영장없는 압수·수색의 근거조항이 있으나, 영장없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로 한정함에 따라 피의자가 제출한 전자정보매체로부터 발견한 타 디지털성범죄의 증거를 영장없이 압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해결방안)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긴급 온라인 압수수색 제도 도입

- 「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1조(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등에 대해 온라인수색 및 사후영장 제도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정보 선삭제·후소명

ㅇ (현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심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방심위를 통하지 않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이 제한되지 않음

ㅇ (해결방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일지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시정요구나 피해당사자 및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일반 민원인으로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 및 2차 가해 게시물을 삭제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요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

ㅇ (문제점) 피해 영상물 삭제, 심리 치료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범죄수익 환수금이 피해자 지원에 직접 사용될 수 없는 현행 피해자지원기금 체계로 인해 필요재원 확보가 어려움

ㅇ (해결방안) 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독립 예산 편성 및 ② 성범죄 피해자의 치료비 및 경제적 지원신청기한을 폐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함

- 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독립예산 편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항목 별도 편성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환수율을 100%까지 상향하여 피해 영상물 삭제 및 경제적 지원에 할애함

- ② 지원신청기한 폐지: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피해자 보호 지원 신청기한 제한 폐지하는 등 현행 치료비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10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제적 지원을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함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강화 방안

(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체용어 발굴 및 확산

○ (현황) 국내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형사책임 조건에 피해자의 피해감정 중 하나인 '수치심' 또는 '성적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다양한 피해감정을 소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 우려가 있음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커뮤니티 규정에서 발견되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에서도 법률의 '성적 수치심'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가해자 중심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의 사회적 인식 변화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볼 때에도 성범죄 피해를 협의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반영한 용어 개정이 필요함

○ (해결방안) 성범죄 피해자와 상담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 등 현행 법령상 성범죄 관련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용어를 발굴하고,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성범죄 처벌 관련 법령에 담긴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성 중립적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문구로 대체

(나) 방송보도·영상재현 윤리원칙 수립 및 확산

○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에 관한 피해자인권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언론보도, 방송재현 등을 통해서 성범죄 피해에 대한 묘사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 (해결방안) 언론보도, 방송재현, 온라인 영상이나 게시물 등을 통해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 성범죄 피해 규정 및 묘사에 관한 보도 및 방송재현 윤리원칙을 마련하고, ② 방송 및 언론인, 크리에이터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및 ③ 2차 가해 경각심 제고 및 인식개선 공익광고를 집행함

<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체용어 발굴 및 확산 방안 >

구분	세부 추진 과제
방송보도 및 영상재현 윤리원칙 마련	- 성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송윤리 원칙 마련
언론·방송·크리에이터대상 인식개선캠페인	- 방송 및 언론인, 크리에이터 성범죄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디지털성범죄피해 사건 보도 및 방송재현 사례집 및 가이드 제작·배포
2차가해 경각심 제고 및 인식개선 공익광고·교육 실시	-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한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인식개선 공익광고 집행 - 인터넷 이용자,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성범죄 2차가해 방지 관련 피해자 인권 보호 교육 및 인식 개선 교육

5. 정책적 활용 내용

○ (정책적 활용) 본 연구의 결과물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 및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 등의 논의 의제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제4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강화 방안,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방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추진과제를 제안함
- 이와 같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2차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과제의 보완 및 신규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5개 부처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부처 간 협의 안건에 활용 가능함

6. 기대효과

ㅇ (제도마련)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및 제도 마련시 참고 가능한 정책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기여함

- 본 연구는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적정보의 신고 및 삭제처리 절차의 마련실태를 검토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원함

ㅇ (피해예방) 임시조치 요청대상 확대 필요성 검토, 현행 신고접수·처리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 피해자 중심의 삭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개인정보의 유포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함

ㅇ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불법촬영물 등의 영상정보 이외에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정보의 신속한 삭제 기반을 조성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증가

○ (유포피해의 심각성)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합성·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등과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가능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빠른 확산이 이뤄지고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4. 24.)에 따르면,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정보를 이용한 피해는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음

- 성인 14.5%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불법영상물 유포(9.7%)', '지인능욕(8.7%)', '몰래카메라(7.5%)', '디지털성착취(5.3%)', '몸캠(4.7%)' 순으로 디지털성범죄 유형의 목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디지털성범죄 목격 경험률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2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p.117, (단위: %)

○ (피해 신고현황)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자수는 2022년 기준 7,979명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

- 2022년 피해신고자는 7,979명이며 총 12,727건의 피해를 접수했으며,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1.6건의 피해를 중복하여 호소함

[그림 1-2] 디지털성범죄 피해접수 유형별 현황(단위:건)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202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

- 피해 유형은 2022년 기준으로 유포불안(3,836건, 30.1%), 불법촬영(2,684건, 21.1%), 유포(2,481건, 19.5%), 유포협박(2,284건, 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사이버괴롭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표 1-1> 디지털성범죄 피해접수 유형별 현황(단위:건)

연도	합계	불법촬영	편집·합성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18	2,289 (100.0%)	656 (28.7%)	69 (3.0%)	758 (33.1%)	208 (9.1%)	216 (9.4%)	108 (4.7%)	274 (12.0%)
2019	4,114 (100.0%)	1,043 (25.4%)	144 (3.5%)	1,213 (29.5%)	354 (8.6%)	557 (13.5%)	273 (6.6%)	530 (12.9%)
2020	6,983 (100.0%)	2,239 (32.1%)	349 (5.0%)	1,586 (22.7%)	967 (13.8%)	1,050 (15.0%)	306 (4.4%)	486 (7.0%)

2021	10,353 (100.0%)	2,228 (21.5%)	176 (1.7%)	2,103 (20.3%)	1,939 (18.7%)	2,660 (25.7%)	533 (5.1%)	714 (6.9%)
2022	12,727 (100.0%)	2,684 (21.1%)	212 (1.7%)	2,481 (19.5%)	2,284 (18.0%)	3,836 (30.1%)	534 (4.2%)	696 (5.4%)

피해자별 호소내용을 중복집계함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202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 p.23

○ (디지털성폭력 피해 특성)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9)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재유포 위험에 의한 좌절감,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비방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 등 반복되는 유포와 2차 가해 피해 가능성에 노출됨

- 원본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한번 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재편집·변형되어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유포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감과 공포가 지속됨
- 피해가 알려진 이후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한다거나,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휴대폰이나 SNS를 통해 비난과 협박 등을 경험하는 우려도 있음
- 피해자들은 제3자에게 신원이 노출되거나 제3자가 피해영상을 접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심리적 위축감과 불안을 경험하기도 함

○ (개인정보 유출 현황)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나 초상이 포함된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이외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로도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022년 전체 삭제지원 213,602건 중 18.4%를 차지한 39,298건으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상승함
- 유출된 피해자 정보 유형은 연령정보(24,445건, 50.0%)가 가장 많았고, 성명(19,322건, 39.5%), 소속 (4,213건, 8.6%), 주소 (895건, 1.8%), 연락처 (51건, 0.1%) 순으로 나타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은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될 때 피해 아동의 연령을 게시글 제목 등에 유출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정보 유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함

<표 1-2> 삭제지원 피해촬영물에 동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현황(단위:건)

구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개인정보 동반유출	유출 정보 유형					
			합계	성명	연령	소속	주소	전화번호
2018	28,879	5,935	6,700	4,793	622	546	533	206
	(100.0%)	(20.6%)	(100.0%)	(71.5%)	(9.3%)	(8.1%)	(8.0%)	(3.1%)
2019	95,083	17,427	22,437	16,595	820	2,203	2,773	46
	(100.0%)	(18.3%)	(100.0%)	(74.0%)	(3.7%)	(9.8%)	(12.4%)	(0.2%)
2020	158,760	24,962	37,800	20,873	8,991	2,525	5,237	174
	(100.0%)	(15.7%)	(100.0%)	(55.2%)	(23.8%)	(6.7%)	(13.9%)	(0.5%)
2021	169,820	25,432	27,047	12,803	7,058	4,794	2,375	17
	(100.0%)	(15.0%)	(100.0%)	(47.3%)	(26.1%)	(17.7%)	(8.8%)	(0.1%)
2022	213,602	39,298	48,926	24,445	19,322	4,213	895	51
	(100.0%)	(18.4%)	(50.0%)	(39.5%)	(26.1%)	(8.6%)	(1.8%)	(0.1%)

※ 중복집계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이 함께 확인되어 삭제지원한 실적임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202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 각년도.

○ (피해자 인적 정보 보호 필요성)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정보에 대한 보호,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등 예방, 보호, 피해회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촬영물이나 편집·변형물 등 피해자의 신체나 초상정보만을 유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반 유출함으로써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불법촬영물의 삭제지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정보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정보를 일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정보와 분리하여 유출 방지 및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장시간에 걸쳐 잠재적인 유포가능성이 지속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가 범죄피해로부터 회복되어 일상으로의 정상적인 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나. ‘잊힐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확대

ㅇ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 확대) 온라인 상에서 자기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 상에서 ‘잊힐 권리’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함

- 리얼리서치코리아(2023)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1%가 디지털 상에서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삭제 서비스가 운영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할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잊힐 권리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이코리아뉴스, 2023. 5. 10. 재인용)
- 아동·청소년·일반인 등까지도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에 게시된 글, 사진, 영상 등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돕는 서비스인 ‘디지털 장의사’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4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만 24세 미만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만 18세 이전에 게시한 자기관련 게시글의 삭제를 지원해왔으며, 최근 국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24년 1월11일부터 신청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까지 확대한 바 있음

ㅇ (삭제지원 필요성 인식 확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 처벌 강화와 더불어 선제적인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울산광역시, 2021)

- 일반 국민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ㅇ (국정과제로서의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이 제63번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호 지원 체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됨

-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반영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이 국정과제에 포함됨
- 이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가 포함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이 범부처 업무 목표로 수립됨

○ (정책개발 필요성) 부처간·민관 협의회가 출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함
- 2023년 3월에 민간 플랫폼사업자까지 참여하는「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으며, 2022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협력사항 논의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 부처협의를 통해 과제 추가, 삭제, 내용 조정, 구체화 등이 예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의 발굴 및 타부처와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구체화를 지원하는 정책연구가 필요함

2. 연구 목표

○ (목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발굴을 목표로 함
-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물 및 개인정보에 대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분류체계 등에 대한 비교 분석함
-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인터넷사

업자의 신고접수 강화 필요성 및 임시조치 요청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피해자 인적정보 신고 및 삭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신규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잊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발굴함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구성과 범위) 본 연구는 ① 서론, ②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개념 및 보호범위, ③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 분석, ④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1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함
- 제2장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개념 및 보호범위를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범위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삭제 대상 정보 범위,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 체계현황 등을 분석함
- 제3장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해외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제4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제1절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회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제2절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 제4장 제2절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①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강화 방안, ②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방안,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④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강화 방안 등의 4가지 차원에서 추진과제를 발굴함

제 2 장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개념 및 보호범위

제 1 절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의 보호범위

1.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범위

ㅇ (잊힐 권리의 개념)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삭제 및 유포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이 개념은 개인정보의 게재와 삭제에 대한 자기결정권 개념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 디지털플랫폼환경에서 인터넷 게시물 등을 통해 개인의 활동이나 흔적, 개인정보 등이 쉽게 수집·저장되는 반면 개인이 디지털화된 정보의 처리 및 삭제 능력을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에게 개인정보 등의 처리에 있어 이용자의 권한을 보장해야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개념임

ㅇ (잊힐 권리의 보장 제도화 동향)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개인이 유럽정보보호지침(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에 따라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함

- 유럽 GDPR 제17조는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 정보 통제자(controller)는 개인정보가 수집된 처리 목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한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의 처리기반이 되는 동의를 처리하고 해당처리에 대한 기타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그리고 정보주체가 처리에 반대하고 관련처리에 대해 우선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되거나, 유럽연

합이나 회원국의 법률적 의무 준수에 필요한 경우라면 부당한 지체 없이 삭제가 요청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가짐

○ (국내법 도입 현황) 국내법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삭제·정정·접근 제한 등을 요청할 권한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6년 도입된 지침에 따라 자기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요청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에서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해서 임시조치 등 구제수단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요청권이 인정되나, 권리침해가 아닌 자기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았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4월 29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권한의 자발적 삭제 요구권에 관한 지침'을 고시한 바 있음
-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의 형태로 '잊힐 권리'를 인정함
- 신청자가 자기게시물에 한해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해당 게시물에 한해 게시판을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캐시 등을 삭제하여 검색결과에서 배제하는 접근배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본인이 작성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탈퇴자도 게시물의 삭제 요청이 가능하고, 사후에도 지정인 또는 유족이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색결과에 대한 잊힐 권리) 검색결과에서 자기정보 검색이 배제되도록 하는 권리는 국내 법률에서 보호되지 않고 있으나, 국내 주요 포털의 자율규제기구인 KISO의 정책규정에 따라 검색배제 요청이 가능함

- 국내법에서 피해자의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검색결과에 대해서 제외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음

- KISO의 정책규정 제3장에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13조(예외적 삭제)는 '정무직 공무권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음(손헌, 김태열, 2016)

ㅇ (시사점) 국내법은 복수의 법률을 통해서 자기정보에 대한 삭제 및 접근배제권 개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함

- 복수의 법률에서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수정·접근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3자 게시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기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접근배제권을 요청할 수 있음
- 일반적인 개인정보, 자기게시물, 제3자 게시물 등에 대해 국내법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삭제 및 접근배제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및 접근배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빠르게 복제 및 전파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정보에 비해 성범죄피해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삭제 및 접근배제권은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삭제 대상 정보 범위

ㅇ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호 범위) 국내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누설 및 유포 방지, 삭제 지원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피해자의 신체나 초상이 노출된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조작영상물, 또한 피해자의 신원 정보 등에 해당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는 누설 및 유포 방지 대상 정보의 범위로 성범죄 피해자의 주

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함

ㅇ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호 근거법령) 국내법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언론/방송/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법령 자체로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24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제30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유출 또는 유포가 금지되어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가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에게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정보의 누설이 금지됨
- 또한, 동 조항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판, 언론,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만약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짐
-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정보 보호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원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국내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성폭력방지법」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는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적에 있었던 사람에게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함
-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

활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책임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국내법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표 2-1> 성범죄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및 규정 현황

구분		세부 추진 과제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제24조제1항), 누구든지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인적사항이나 초상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해서는 안됨(제24조제1항)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50조제2항제1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0조	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 또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피해자, 범죄신고자등의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방지법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이 금지됨(제30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6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9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제9조제2항)

제 2 절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 체계

1. 정보유형별 지원절차

○ (삭제대상 정보범위)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 정보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 등 피해영상에 대한 처리절차와 피해자의 인적정보에 대한 처리절차는 일부 상이함

- 피해자의 초상이나 신체노출 정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으로 분류되어「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에 따른 신속삭제 및 필터링 조치 대상임

-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 처리가 필요한 정보 유형의 정의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직접 신고접수 및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희박함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와 동법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은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초상이 포함된 영상물에 대해서만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신속한 처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임

<표 2-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 · 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 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 ·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 · 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2-3>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범위

유형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또는 복제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따른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신체노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따라서, 신체, 초상, 음성의 노출이 없는 비 영상정보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명예훼손과 동등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시조치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정보로 분류됨
- 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디지털성범죄정보 긴급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 대상으로 처리됨

2.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피해자의 초상이나 신체가 노출된 불법촬영물의 삭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근거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삭제요청이 가능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세·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함

<표 2-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이들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 ·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의 불법촬영물 등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의 제목 · 명칭 등을 비교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검색결과 송출제한 조치를 해야 함
- 이외에도,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수 없도록 게재하려는 정보를 비교·식별하여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이처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신고·접수 기능, 검색어 제한 조치, 영상물 비교·식별 및 필터링 조치의 시행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피해자의 초상 및 신체가 포함된 영상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함

<표 2-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 ·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 · 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 · 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 · 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 · 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 · 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이하 생략>

- 동법 제22조의6은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강제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표 2-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 · 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ㅇ (조치의무대상자)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접수 및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받은 사업자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과 이용자를 보유한 부가통신사업자임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할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1항)

<표 2-7>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6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정보 삭제

○ (디지털성범죄정보 긴급심의) 불법촬영물 등 이외의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수받아 긴급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미성년자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 일반적인 개인정보나 명예훼손 정보와 달리 제3자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히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 신속심의를 시행하고 있음
- 심의대상 정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적 불법촬영정보, 허위영상정보, 피해자 관련 신상정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이 포함됨

○ (임시조치) 불법촬영물 등 영상정보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정보의 삭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 사생활 침해 정보와 동일하게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

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함

<표 2-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대상 삭제지원 제도

ㅇ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제도) 「성폭력방지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함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촬영물 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에 유포된 촬영물 등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 그 밖에 촬영물 등 삭제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촬영물 등 삭제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피해자의 피해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게 됨
-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등임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의 요청이 있는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없이도 삭제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는 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표 2-9>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o (피해자 지원센터 현황)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는 촬영물 등 삭제지원을 위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업무를 위임함

<표 2-10>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 삭제 요청 및 확인 · 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위한 물적 ·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 발표에 따라 상담 및 피해 촬영물 무료 삭제지원, 피해자지원기관 연계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표 2-1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현황(단위:건)

구분	합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	의료지원연계
'21. 10월 기준	151,748 (100.0%)	136,157 (89.7%)	14,885 (9.8%)	611 (0.4%)	95 (0.1%)
'22. 10월 기준	209,429 (100.0%)	192,092 (91.7%)	15,862 (7.6%)	1,326 (0.6%)	149 (0.1%)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ㅇ (삭제 지원 절차) 피해자의 신고접수 이외에도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SNS), P2P, 웹하드 등 이용자가 게시물을 게재·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 특히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의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SNS), P2P, 웹하드, 검색엔진, 아카이브, 커뮤니티,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삭제요청 및 완료 여부 확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삭제지원은 피해자의 삭제요청 접수 이외에도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며,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하고 있음

[그림 2-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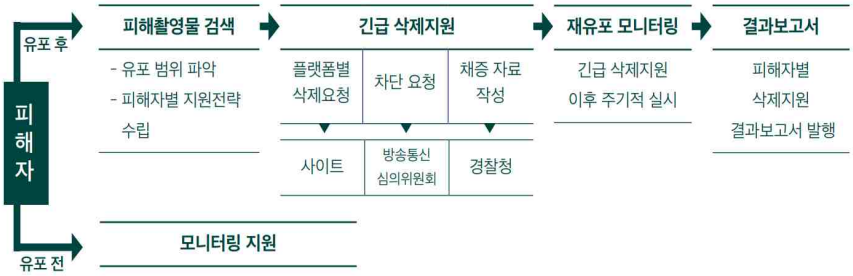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 2020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및 연계 매뉴얼, p.24.

o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신고접수가 없더라도 사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피해정보를 발견하여 삭제 지원을 하

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유포 및 재확산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여 삭제할 경우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지 못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로를 조사한 결과 타인이 피해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2>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요청자의 피해인지 경로 현황(단위:명)

구분	합계	직접인지	타인인지	미상*
2019	525 (100.0%)	200 (38.1%)	187 (35.6%)	138 (26.3%)
2020	1,808 (100.0%)	477 (26.4%)	817 (45.2%)	514 (28.4%)
2021	2,789 (100.0%)	964 (34.6%)	560 (20.1%)	1,265 (45.4%)

*피해자가 피해인지 경로를 밝히지 않은 경우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202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 각년도.

- 2022년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없이도 수사기관의 지원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48,719건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피해를 방지함

<표 2-13> 지원근거별 삭제지원 건수(단위:건)

구분	합계	피해자 등 요청	선제적 삭제지원	
			수사기관요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21	169,820	123,138	13,245	33,437
	(100.0%)	(72.5%)	(7.8%)	(19.7%)
2022	213,602	164,883	13,859	34,860
	(100.0%)	(77.2%)	(6.5%)	(16.3%)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 202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

제3장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 분석

제1절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관련 제도 운영 해외 사례

1. 영국

o (개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 이하 '영국 온라인 안전법')」의 제정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신고접수 및 삭제 의무가 부과되어 피해자의 초상이나 신체 영상은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나,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

- 성범죄피해자의 잊힐 권리와 관련된 법률은 「영국 온라인 안전법」,「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이하 괴롭힘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 해당됨
- 최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콘텐츠' 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게끔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통과됨
- 이 법의 제정으로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형사사법 및 이민법(the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2015)」, 「학대행위 및 성희롱(스코틀랜드)법(the Abusive Behaviour and Sexual Harm (Scotland) Act 2016)」에 따른 극단적인 포르노 이미지,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유포 협박 등의 불법콘텐츠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유포를 방지할 의무가 부과됨
- 그러나, 이 법은 피해자의 신체나 초상이 담긴 촬영물 등의 삭제에 관한 것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정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접근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로 보기는 어려움
- '불법콘텐츠'와 '유해콘텐츠'에 대한 삭제 등 주의의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등장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불법 혹은 유해 콘텐츠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영국 온라인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인적정보 노출은 일반 개인정보·사생활침해와 동일하게 다뤄지며「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의 일반 개인정보의 삭제권을 적용받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괴롭힘방지법」과「개인정보보호법」은 민·형사상 손해배상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적용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삭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의 데이터에 대해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게시글 삭제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님

o (영국 온라인 안전법)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포르노 등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나 초상이 노출된 영상정보에 대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포 방지를 의무화함

-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성착취물 이외에도 성기 사진이나 영상을 고의적으로 보내는 행위, 동의없이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포르노를 공유하는 행위도 범죄화함
- 이 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규제된 사용자 간 서비스,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에게 개인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접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설계 또는 운영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이 때, 적절한 조치는 불법 및 유해콘텐츠 위험 평가 의무, 불법콘텐츠에 대한 의무, 불만절차에 대한 의무 등이 포함됨
- 불법 및 유해콘텐츠 위험 평가 의무는 자사 서비스가 이용자를 위해 안전한지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조처를 취해야 하는 의무이며, 불법콘텐츠에 대한 의무는 불법콘텐츠를 판단하여 적절히 대처할 의무이며, 불만 절차에 대한 의무는 신고를 통해서 제공자가 누군가로부터 불법 콘텐츠가 있다는 경고를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하는 의무임

- 이러한 의무는 서비스의 설계, 운영 및 사용 방식은 물론 서비스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사용자가 서비스 또는 특정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있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근에 대한 정책, 콘텐츠 게시 중단을 포함한 콘텐츠 조정, 사용자가 접하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마련 등을 포함함
- 불법콘텐츠에 대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가 불법콘텐츠나 사기성 광고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의 판단을 강제하지 않는 국내법과의 차이가 있음
- OFCOM은 이 법이 통과된 날부터 시작하여 18개월 이내에 기록 보관 및 검토, 아동 접근 평가,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음란물 제공자에 대한 지침,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 아동위험 평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guidance)을 발표해야 하는데, 아직 이 지침이 발표되지 않음

o (괴롭힘 방지법)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에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처음 도입될 때는 스토킹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와 같은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다루고 있음
-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괴롭힘으로 간주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이 될 수 있음
- 해당 법률은 민사 소송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인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
- 다만 이 규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가해자의 형·민사상의 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o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현행 법령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의 데이터에 대해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서 작용

-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이 개인정보의 삭제요청권을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로 활용됨

- 제17조는 다음의 <표 3-1>의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명백하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의 근거조항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표 3-1>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권이 해당되는 경우

①개인 데이터가 원래 수집 또는 처리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데이터 보유의 합법적 근거로 동의를 의존하고 있고, 개인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③처리의 근거로 합법적 이익을 의존하고 있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하는 데 대한 합법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④개인 데이터를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처리하고 개인이 해당 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⑤개인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처리한 경우 (즉, 1번 원칙의 합법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⑥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 ⑦정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처리한 경우

- 이 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데, 삭제요청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이 가능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다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의 <표 3-2>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삭제 요청을 거부할 권리도 있음

<표 3-2>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요청권 거부

①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②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③공익을 위해 수행되거나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수행되는 업무의 수행하기 위한 경우 ④공익, 과학 연구, 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보관의 경우 ⑤삭제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처리의 달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⑥법적 청구의 설정,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한 경우

- 즉,「개인정보보호법」상 게시글 삭제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고, 피해자가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음

- 결과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게시될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금지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2. 호주

o (개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 이하 '호주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사이버괴롭힘 콘텐츠'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신속 삭제 의무가 있음

- 호주는 2021년 7월 23일에 「호주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으며, '불법·제한된 온라인 콘텐츠'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아동이나 성인 대상 성적 학대, 동의없는 성적 영상물뿐만 아니라, 성행위, 과도한 노출, 폭력, 테러행위 등을 보여주는 이미지나 영상은 불법 및 제한된 콘텐츠로 분류되어 삭제 대상이 됨
-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정보 및 사생활침해 정보는 사이버괴롭힘 콘텐츠로 분류된다면 호주의 '온라인 안전국(e-Safety Commissioner, 이하 '온라인 안전국')'이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게 삭제 또는 차단을 요구할 수 있음

o (삭제대상 불법 콘텐츠)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성인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cyber abuse & cyber-bullying)은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콘텐츠로 분류됨

- 「호주 온라인 안전법」은 '불법·제한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때, '불법·제한된 온라인 콘텐츠'란 아동 성적 학대나 테러 행위를 보여주는 이미지, 영상 등 가장 심각하게 유해한 자료부터 아동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시뮬레이션 콘텐

츠 등의 온라인 콘텐츠, 성행위, 상세한 과도한 노출 또는 심각한 폭력 등을 포함함

- 일반적으로 성 문제, 약물 남용이나 중독, 범죄, 잔인함, 폭력, 반항적이거나 혐오스러운 현상을 묘사, 표현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성인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도덕성, 품위, 타당성의 기준을 어느 정도 위반하는 내용이 삭제 대상 콘텐츠로 분류됨
- 은밀한 성적 영상의 경우 성행위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성인이나 18세 미만의 어린이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경우, 또는 범죄나 폭력 문제를 조장, 선동 또는 지시하는 내용 등도 삭제 대상으로 분류됨
-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로 볼 수 있으며, 역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콘텐츠로 분류됨
- 온라인안전국은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메시지, 부끄러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 당사자에 대한 불쾌한 온라인 가십,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계정 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함
- '아동 대상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는 ①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로서, ②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하기에, ③해당 콘텐츠가 호주 특정 어린이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의도되었거나, 호주 아동에게 심각하게 위협 및 협박, 희롱, 굴욕감을 주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성인 대상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는 ①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로서, ②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하기에 해당 콘텐츠가 호주 특정 성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③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하기에 모든 상황에서 콘텐츠를 위협적이거나 희롱,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의미함

<표 3-3> 호주 온라인안전국의 사이버괴롭힘 신고메뉴의 항목

유형	내용
아동사이버괴롭힘 (18세미만)	아동에게 또는 아동에 관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심각한 위협, 심각한 위협, 심각한 괴롭힘 또는 심각한 굴욕감을 주는 행위 (참고: 최소 48시간 전에 서비스 또는 플랫폼에 보고해야 합니다.)
성인사이버괴롭힘 (18세이상)	위협적이거나, 괴롭히거나, 공격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성인에 대한 심각한 학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참고: 최소 48시간 전에 서비스 또는 플랫폼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지기반 악용사례	공개된 사람의 동의 없이 은밀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공유(또는 공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불법 및 제한된 콘텐츠	eSafety는 아동의 성적 착취 또는 학대를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자료, 테러를 지지하는 자료 및 범죄 또는 폭력 문제를 조장, 선동 또는 지시하는 자료

- '사이버 괴롭힘'의 형식으로는 게시물, 댓글, 텍스트, 메시지, 채팅, 라이브 스트리밍, 밈, 이미지, 비디오 및 이메일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댓글이나 메시지 등 텍스트까지도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초상이나 신체에 대한 이미지 없는 게시글도 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래의 사이버괴롭힘의 예시 이외에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음

<표 3-4> 호주 온라인안전국의 사이버괴롭힘의 예시

-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메시지를 보냄
- 부끄러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
- 당사자에 대한 불쾌한 온라인 가십을 퍼뜨림
- 자신의 이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듦
- 당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믿도록 속이는 것

o (신고·삭제 절차) 피해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의제기 후 48시간 이내에 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안전국에 신고할 수 있음

- 온라인안전국은 플랫폼이 합법적인 불만을 무시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심각하게 해로

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다만, 신고권자가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여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임시조치와 유사하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선요청 후 온라인안전국에 제재를 요청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방심위에 신고접수하고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하는 절차와는 차이가 있음
- 또한, 48시간의 유예, 미처리시 온라인안전국을 통한 24시간 내 삭제는 국내와 비교해서 느림

o (신고권자)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의 대상 또는 대상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제30조)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해당 이미지나 비디오를 공유하거나 전송하는 데 사용된 사이트, 앱 또는 서비스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않고도 익명으로 이미지나 동영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미지 기반 학대가 아닌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의 경우에는 권리자(본인, 부모·보호자, 권한 부여자)만 신고할 수 있는데, 제3의 신고자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아 불법촬영물 유포 등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아동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에 대해서는 본인, 부모, 보호자, 또는 아동이 해당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에 대해서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음

o (48시간 이내의 삭제) 피해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48시간 이내에콘텐츠를 삭제해야 함

- 콘텐츠 삭제요청 후 48시간 이내 삭제되지 않을 때, 피해자는 온라인안전국에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안전국은 신고를 조사한 후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통지 및 접속제한 등을 명령할수 있음(제36조)
- 다만,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콘텐츠는 복제 및 유통 속도가 매우 빨라서 48시간

의 유예는 이미 사후 대응으로서는 신속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비해서 불법정보에 대한 조처가 느리다고 볼 수 있음

o (온라인안전국의 판단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에 따른 삭제고지) 온라인안전국은 이용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은 불법 및 제한콘텐츠에 대해서 조사하고,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나 호스팅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콘텐츠 게시자에게 삭제 및 접속제한 통지를 내릴 수 있음

- 온라인안전국은 해당 콘텐츠가 사이버괴롭힘 콘텐츠라고 판단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고지를 송부할 수 있으며, 삭제고지를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고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함
- 온라인안전국은 플랫폼이 합법적인 불만을 무시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심각하게 해로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는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라는 삭제통지를,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자료 호스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접속제한통지를, 게시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콘텐츠 게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최종 사용자 고지)를 받을 수 있음
-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라고 판단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고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게시물, 댓글, 텍스트, 메시지, 채팅, 라이브 스트리밍, 밈, 이미지, 비디오 및 이메일까지도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서비스제공자는 삭제 고지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또는 온라인안전국이 허용하는 더 긴 기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받음
- 온라인안전국은 'eSafety 가이드'라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주요 플랫폼 및 서비스의 이용자 불만처리 링크와 신고접수 링크를 제공함
- 「호주 온라인 안전법」은 삭제통지의 미이행시 민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콘텐츠 삭제를 시행하게끔 하여 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이때 과태료는 개인의 경우 111,000호주달러, 법인의 경우 최대 555,000호주달러 까지 부과할 수 있음

3. 미국

o (개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성착취물에 대해 인지했을 때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음

-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사생활정보일지라도 게시글에 대한 강제 삭제 조치는 없음
-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사생활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나 명예훼손 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국내와 같은 임시조치나 임의의 임시조치 등에 해당하는 조치는 없음
- 다만, 미국 연방 「형법(18 USC §2258A, 이하 「미국 형법」[1])」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성착취물에 한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인 책임 부여
- 신고 의무 이외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탐지·삭제·신고하는 자율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o (신고의무) 「미국 형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성착취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 신고 등을 통해서 인지했을 경우, 이를 NCMEC(아동청소년 실종 및 학대 방지

---

1) 「미국 형법」, 18 USC §2258A

(a) 보고 의무.

(1) 일반적으로,

(A) 의무.—온라인 아동 성 착취의 확산을 줄이고 아동의 온라인 성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자는—

(i) (2)(A)항에 기술된 사실이나 상황을 실제로 알게 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B)항에 기술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ii) (2)(B)항에 기술된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한 실제 지식을 얻은 후, (B)항에 기술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B) 기술된 조치.-이 하위 단락에 기술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i) NCMEC의 CyberTipline 또는 NCMEC가 운영하는 CyberTipline의 승계인에게 해당 제공자의 우편 주소,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전자 우편 주소 및 개별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ii) 그러한 사실이나 상황을 CyberTipline 또는 NCMEC가 운영하는 CyberTipline의 부속기관(successor)에게 보고합니다.

센터, National Center of Missing or Exploited Children, 이하 NCMEC)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함

- NCMEC는 미국 의회에서 1984년에 「실종아동지원법(the 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을 제정하여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민간단체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법무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준공공기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아동성착취와 관련한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해 인지할 경우 NCMEC가 운영하는 CyberTipline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아동성착취물의 유포에 대해서 알면서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의무 미이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300,000의 벌금이 부과됨

4. 시사점

o (삭제 대상 콘텐츠 범위 차이) 국가별로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 삭제의 범위가 상이하게 차이나고 있으나, 영국과 호주에서는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정보 범위에서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뤄짐

- 「호주 온라인 안전법」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형태의 불법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이버 괴롭힘'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원정보나 사생활 정보에 대한 삭제까지 포섭하고자 함
-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은 삭제대상 콘텐츠를 불법촬영물 등과 피해자의 인적 정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호주 온라인 안전법」은 규제 콘텐츠를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로 정의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함
- 반면, 호주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는 당사자(아동, 성인)에게 "영향"을 끼칠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협, 협박, 괴롭히거나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그 대상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볼 수 있음
- 즉, 국내는 규제대상 콘텐츠가 디지털 성범죄물로 한정적이라면, 호주는 온라인상 위해

가 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함

-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외하고 특정 유형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나 제도는 부재함

o (삭제요청 절차) 신고자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신고를 접수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심의하여 삭제를 명령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접수받아 불법성을 판단하여 삭제하는 시스템을 가짐

- 영국과 호주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불만처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이나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요청이 삭제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인지를 확인하여 삭제하도록 함
- 사업자에게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게 하고, 불법성 판단결과에 대한 책임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법보다는 사업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함
- 사업자별로 불법성의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은 국내법체계보다는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일차적으로는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체계의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음

o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의 정도) 복제와 유포가 용이한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성 측면에서나 '잊힐 권리'에 대한 강제성 측면에서 볼때에는 해외 사례보다는 국내 사례가 보다 피해자 보호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삭제명령이 있는 호주의 경우에도 신고접수 후 삭제까지 48시간 유예 및 24시간 강제를 허용하고 있어, 신고접수후 최대 72시간의 시간 지연이 있음
-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긴급심의제도를 운영하는 국내의 경우에 비해, 신고접수-불법성 판단-삭제 조치에 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림
-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 사업자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업자 판단으로는 삭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는 국내법 체계가 더 보호적임

o (모니터링 및 신고 의무) 영국과 미국 사례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실태에 대해서 모니터링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사업자에게 서비스 설계(design) 차원에서부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불법정보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아동성착취물 유통을 인지시 신고의무를 부과함

제 2 절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 관련 제도 운영 현황

1.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관련 규정

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o (삭제 대상 콘텐츠)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은 디지털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커뮤니티 규정은 '폭력 및 범죄행위', '안전', '불쾌한 콘텐츠', '무결성 및 진실성', '지식재산권 존중', '콘텐츠 관련 요청 및 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항목은 '안전'과 '불쾌한 콘텐츠'에 해당함
- 안전 항목은 성적 학대 관련 콘텐츠(아동 또는 성인 대상 성적학대, 학대 및 나체이미지)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불쾌한 콘텐츠 항목은 성인나체 이미지 및 성적행위, 성매매 알선 등을 제한하는 규정임
- 메타는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법에 따라 명백한 아동성착취물은 게재 제한과 동시에 미국의 NCMEC에 보고하고 있음
- 반면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으로 판단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o (성적 학대 관련 콘텐츠) 모든 형태의 합의되지 않은 성적 접촉을 묘사한 콘텐츠 뿐만 아니라, 사적인 성적 대화를 공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콘텐츠는 삭제 대상에 해당함

- 이때, 비동의 성적영상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보복성 맥락 및 위협성 맥락, 이미지에 묘사된 사람과 콘텐츠를 신고한 사람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콘텐츠를 신고한 사람이 이미지에 묘사된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를 비동의 성적영상으로 간주함

- 미성년자의 성적대상화, 미성년자와 관련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오해를 일으키는 가족 콘텐츠,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이버 폭력 및 괴롭힘 등을 게재 금지 콘텐츠로 안내함
- 특히 아동성착취물은 메타가 속한 미국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동성착취와 관련하여 삭제대상 콘텐츠는 아동대상 성적학대, 아동성착취물(CSAM)로 삭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 어린이와의 부적절한 상호작용, 아동에 대한 실제 성적 접촉 알선 또는 계획 등이 해당함
- 또한, 명백한 성착취 의도가 없이 부모가 자녀의 나체사진을 공유하는 경우일지라도, 제3자가 부적절하게 이미지를 사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의 나체사진은 삭제된다고 공지함

[그림 3-1] 메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2차 가해 콘텐츠에 대한 게재 제한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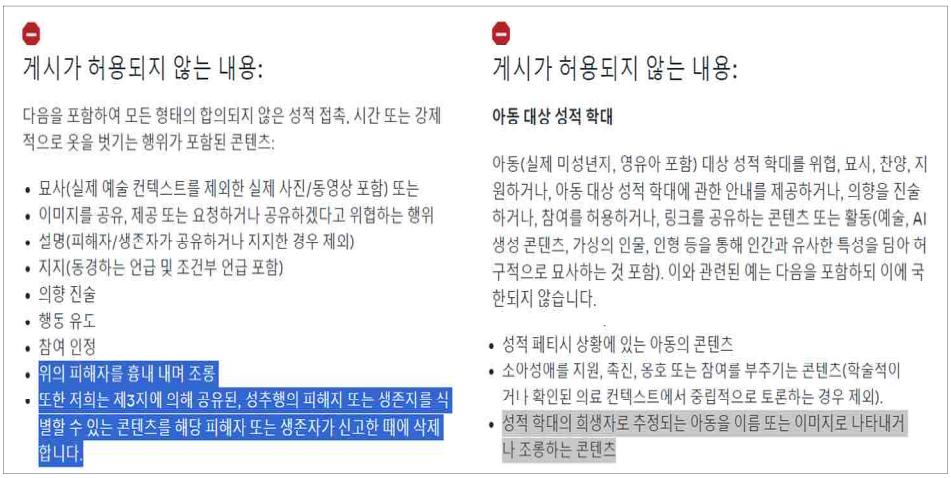

출처: 메타의 투명성 센터.

○ (2차 피해 관련 콘텐츠) 메타의 커뮤니티 규정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성적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는 게재 제한이 가능함

- 합의되지 않은 성적 접촉 개념을 흉내내며 조롱하는 콘텐츠, 성추행의 피해자 또는 생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 성착취 피해 아동을 이름 또는 이미지로 나타내거나 조

롱하는 콘텐츠는 게재 제한의 대상임

- 제3자에 의해 공유된 콘텐츠 중에서 성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성범죄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공식 대리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신고할 경우 강제적인 삭제 조치를 할 수 있음

-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성적 접촉의 개념을 흉내내며 조롱하는 콘텐츠는 경고 화면이 제공되며, 성적요소 없는 아동학대 후유증을 묘사하는 이미지는 신고에 따라 삭제가 가능함

[그림 3-2] 메타의 성적 묘사 없는 2차 가해 콘텐츠에 대한 제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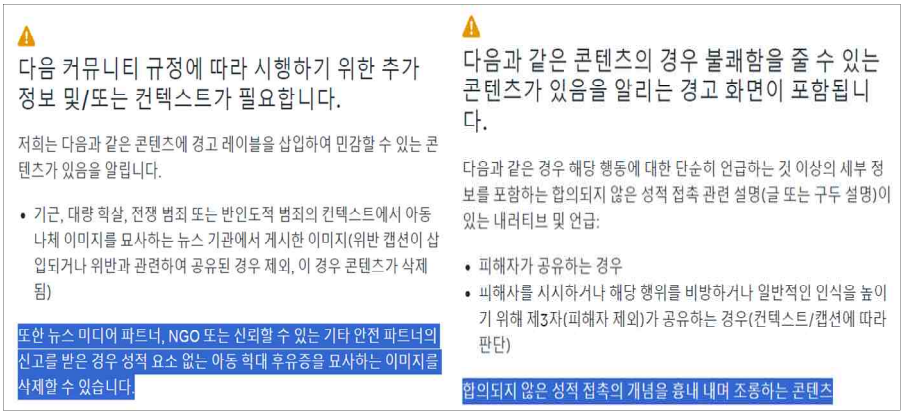

출처: 메타의 투명성 센터.

○ (성인 대상 성적 콘텐츠)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이나 인스타그램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모두 성인대상 성적콘텐츠의 게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음

- 명백하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① 성적인 행위와 성기, ② 미성년의 나체나 성적 콘텐츠, ③ 성매매나 알선, ④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콘텐츠 유포·협박 등의 콘텐츠는 삭제 대상임

- 이외에도 증폭된 성행위 오디오, 나체이미지나 미성년자가 개입된 성적인 콘텐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이미지를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등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처럼 메타는 성착취 영상 이외에도 성적인 행위나 성기노출, 항문노출, 둔부노출, 나체 등의 콘텐츠 공유를 제한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까지도 포함하여 게재 및 공유 제한의 원칙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외조항) 나체가 표현되거나 성적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라 할지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데, 성행위나 수간 묘사 등도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정보에 해당되는 이미지이더라도 성인대상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임

- 메타는 나체이미지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모유수유, 출산 및 출산 직후 장면, 건강 또는 시위행위 관련 사진과 같이 성적대상화의 의도가 없는 일부 사진 및 동영상 공유를 허용하는 네가티브 정책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커뮤니티 규정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성적 행위를 암시하거나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실제 예술, 실제 예술에서 수간을 묘사하는 이미지이나 묘사된 사람이나 동물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 가상 이미지로 인식되거나 가상표시가 있는 광고 이미지의 암시적인 성인 성적 행위 등은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안내함

[그림 3-3] 메타의 성적 콘텐츠 삭제 예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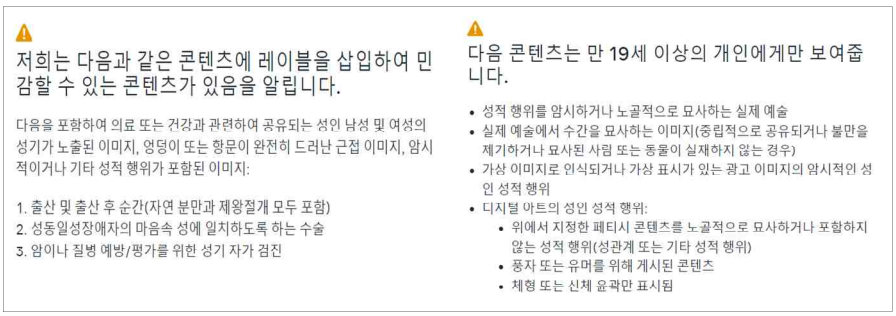

출처: 메타의 투명성 센터.

○ (일반이용자의 신고) 게시물이나 게시자의 프로필, 댓글이나 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게시글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으나, 메타에 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용자는 나체이미지 또는 성적행위를 포함하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프로필이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음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기명신고를 해야 하나, 디지털성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메일주소만 있으면 익명신고를 보장하고 있음
- 페이스북의 경우 계정이 없는 이용자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없으나, 인스타그램은 고객센터에 있는 별도의 신고양식을 사용하여 악용 사례, 스팸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기타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음
- 메타는 한국 이용자가 고객센터에 접근할 경우, 약관과 정책에서 가장 상위의 탭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정의된 불법 촬영물 및 기타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방법, 신고 내용, 신고 제출 방법,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할 경우의 처벌 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4] 인스타그램의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안내

출처: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프로그램) 메타는 커뮤니티 규정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 우선적으로 삭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프로그램(trusted partner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메타는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경험이 있고 유해한 콘텐츠의 판단 능력이 있는 400개 이상의 시민단체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지정하고, 이들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이외에도 메타는 2019년 3월 15일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기계 학습과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Facebook 및 Instagram에서 허가 없이 공유되는 누드에 가까운 이미지나 동영상을 사전에 감지하는 기술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함(Meta, 2019. 3. 15.)

ㅇ (계정정지 또는 해지) 약관의 '4.추가조항'의 '2. 계정정지 또는 해지'에 따라, 커뮤니티 규정, 약관, 정책을 명백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접근을 일시 차단하거나 영구적 비활성화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계정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 또는 삭제할 수 있음

-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은 페이스북이 콘텐츠의 삭제 및 허용의 기준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규젱에 반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고, 공익과 피해의 위험도를 비교하여 허용한다고 안내함

ㅇ (성범죄자의 이용제한) 메타의 경우 성범죄자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거나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약관상 금지되어 있음

- 메타는 이용약관에 성범죄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계정을 비활성화 하고 있음
-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는 구글 고객센터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신고하면 해당계정은 영구 정지 처리됨
-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로그인과 게시글 업로드는 물론이고 다른 사용자 계정을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정삭제에 준하는 제한이 이뤄짐
- 신고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페이스북의 경우는 언론보도나 법원 판결문 등의 링크가 필요하고 인스타그램은 링크 이외에도 첨부파일 등의 문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그림 3-5] 인스타그램의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안내

Instagram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 저희는 Instagram 서비스가 가능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되기를 원하지만, 또한 본 서비스가 안전하고, 보안성을 갖추며, 법을 준수하는 서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회원님이 Instagram 커뮤니티에 참여하려면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Instagram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부라도 금지된 사람 또는 관련 제재 대상 명단에 있어 결제 관련 Instagra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과거에 저희가 회원님의 계정을 법률 또는 Instagram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하여 비활성화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출처: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그림 3-6] 페이스북의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신고양식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신고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를 신고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성범죄자로 확인되면 해당 계정이 즉시 비활성화됩니다.

이메일 주소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이름은 제공하는 문서에 표시되는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신고하는 프로필의 웹 주소(URL)

유죄가 언정된 주, 시/도 또는 국가

서류를 가지고 계세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입증하는 문서(예: 전국 성범죄자 등록 명부, 법정 문서 또는 온라인 뉴스 기사)가 필요합니다.

예

아니요

보내기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Instagram 사용 신고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Instagram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소유한 계정을 발견하면 이 양식을 사용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참고: 신고를 처리하려면 이 사람이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회원님의 Instagram 사용자 이름 (있는 경우)

사용자 이름을 찾으려면 웹에서 instagram.com/[username]으로 로그인하세요

이메일 주소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제공하신 증명 문서에 표시된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Instagram 사용자 이름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예: 법정 문서, 뉴스 기사)

첨부 파일(선택사항)

찾아보기... 선택된 파일 없음

추가 관련 정보

보내기

출처: 페이스북 고객센터.

나. 구글(유튜브)

○ (콘텐츠 삭제) 유튜브의 이용약관과 콘텐츠 정책에 따라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등은 묘사의 수위와 게재 목

적에 따라 게재제한 대상 콘텐츠로 분류됨

- 게재 제한 대상 콘텐츠 유형 중에서 디지털성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콘텐츠 유형은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임
- 모든 유형의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가 게재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만족을 위한 음란물, 페티시즘, 미성년자 성착취 등이 게재 제한 대상 콘텐츠로 분류됨
- 유튜브의 콘텐츠 정책 상에 명시된 게재 제한되는 성적인 콘텐츠의 예시로는 성적 만족을 위한 성기, 가슴 또는 엉덩이 묘사,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물, 성적 행위 묘사 또는 페티시즘 콘텐츠 등이 있음
- 이외에도 음란물이 아닌 영화나 프로그램에서 성적인 묘사만을 발췌하여 제공하는 영상 클립, 더듬기, 키스, 공공장소에서의 자위, 동의없는 성적 묘사, 관음증 등의 콘텐츠는 게재가 제한됨
-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 표현이 있더라도 표현의 수위와 의도에 따라 연령제한 콘텐츠로 분류되어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게재될 수 있음
- 유튜브의 콘텐츠 정책상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유형에서도 신체적인 성폭력이 촬영되거나 가상의 성폭력 연출 장면에 대해 게재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음
- 설령 상기의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사실은 가상으로 연출된 경우라고 할 지라도, 시청자들에게 가상으로 연출된 영상임을 충분하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게재 제한 대상 콘텐츠로 분류됨
- 또한, 불법촬영물 등의 배포를 협박하거나 성폭력을 지지하는 콘텐츠, 또는 신원파악이 가능한 개인을 성적대상화하며 비하하는 콘텐츠의 경우,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 따라 게재 제한이 가능함

ㅇ (신고/삭제)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신고기능을 이용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양식이 제공됨

- 유튜브에서 신고할 수 있는 콘텐츠 유형은, 동영상, 숏츠(클립), 채널, 재생목록, 썸네일,

동영상설명의 링크, 댓글, 실시간 채팅 메시지, 광고 등이 포함됨

- 다만, 동영상, 댓글, 사용자 등 신고대상의 유형에 따라서 신고 사유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각기 다른데, 동영상 신고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항목은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 또는 혐오스러운 콘텐츠, 괴롭힘 또는 폭력, 아동학대 등이 관련성이 있음
- 댓글신고에서는 포르노 또는 음란물, 아동학대 등이 관련성이 있으며, 사용자 신고에서는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아동 학대 등이 관련성이 있음
- 그러나, 재생목록, 채널에 대한 신고는 콘텐츠 유형을 선택할 수 없음
- 유튜브는 고객센터에 '기타법적신고' 양식을 통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위반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아 삭제하고 있음

ㅇ (이용제한) 구글의 경우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계정을 폐쇄하거나 가입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내에서 반복적인 이용약관 또는 콘텐츠 규정 위반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서비스 악용이 발생할 경우 채널 및 계정 폐쇄가 가능함

- 유튜브 채널 이용자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90일 이내에 3번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유튜브 채널을 폐쇄할 수 있다고 안내함
- 유튜브 콘텐츠 정책에 따르면 단 1회라도 심각한 서비스 악용이 있을 경우 채널과 계정이 폐쇄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심각한 서비스 악용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으로 안내하고 있어 불법촬영물의 게재의 경우가 심각한 서비스 악용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다. 트위치

ㅇ (콘텐츠 삭제) 트위치의 약관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성착취 및 성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의 게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이용약관 제10조(금지행위)는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콘텐츠, 또는 불법적인 콘텐츠의 게

시를 금지한다고 기재함

-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성인 성폭력 및 성착취를 조장하거나 위협하는 콘텐츠나 활동은 신고될 수 있으며, 해당 계정은 이용이 정지된다고 안내함

[그림 3-7] 트위치 이용약관상의 금지행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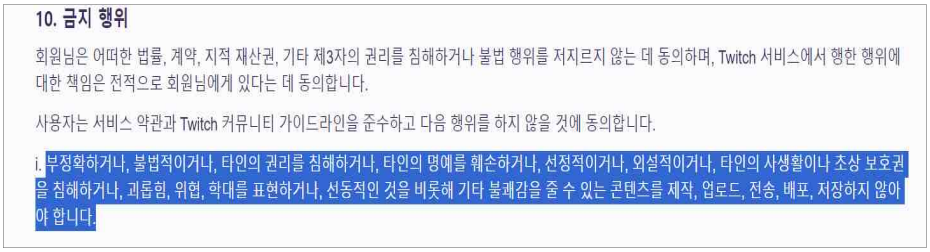

10. 금지 행위

회원님은 어떠한 법률, 계약, 지적 재산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데 동의하며, Twitch 서비스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님에게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용자는 서비스 약관과 Twitch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i.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이나 초상 보호권을 침해하거나, 괴롭힘, 위협, 학대를 표현하거나, 선동적인 것을 비롯해 기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 전송, 배포,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트위치 이용약관.

ㅇ (성적 학대 관련 콘텐츠)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타인의 성적 자유와 존엄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및 이용 정지의 대상이 되지만, 외설적인 콘텐츠와 선정적인 콘텐츠는 경고대상에 해당함

- 게스트를 협박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친밀한 방식으로 만지는 행위,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사적인 음란한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포르노를 제공하는 행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나체 이미지를 공유하는 행위, 조작 또는 '딥페이크'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사적인 이미지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행위 등을 모두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로 정의하고 신고대상 및 이용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함

-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 성적 착취, 성적 위법 행위, 미성년자(이 정책에서 18세 미만으로 정의) 그루밍이 담겨있거나 조장하는 콘텐츠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에 신고하며 이러한 활동이나 해당 콘텐츠에 가담하는 경우 즉시 무기한 이용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안내함

- 다만 외설적인 콘텐츠와 성적서비스, 선정적인 콘텐츠는 성폭력 및 성착취와 구분되어 삭제가 아닌 콘텐츠 경고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 국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콘텐츠는 삭제 대상이 되지 않음

- 트위치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설적인 콘텐츠와 성적서비스의 정의는 명백한 신음소리과 같이 섹스/자위/오르가즘을 암시하는 장시간 오디오를 포함, 명백하거나, 가상적이거나, 암시적인 구강, 항문, 질 섹스 성기를 더듬거나 애무하는 것을 포함함
- 이외에도, 명백하거나, 가상적이거나, 암시적인 자위 및 상호 자위행위 성적인 체액 노출, 폰 섹스, 채팅 섹스, 기타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성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채팅,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적 마사지, 성행위 촬영을 포함한 성행위 광고 또는 권유 등이 포함되어, 국내법에서 불법콘텐츠로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일지라도 트위치에서는 즉시 삭제 대상이라기보다는 경고 대상에 해당함
- 만약, 성 또는 나체 노출에 관한 대화가 교육 목적이거나 그 외 Twitch의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널의 설정을 통해 '성인 콘텐츠'라고 표시하고 제공될 수 있음
- 선정적인 콘텐츠는 가슴, 엉덩이, 골반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나 카메라 앵글 및 이러한 부위를 고의적으로 강조하는 자세, 가슴, 엉덩이, 생식기를 더듬거나 이러한 부위를 향해 노골적인 동작을 하는 행위, 성적 만족감을 위해 특정 신체 부위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거나 성적인 역할극을 하는 등 페티시즘에 관련된 행동이나 활동, 성교육과는 무관한 상황에서 성인용품을 다루는 행위, 탈의나 신체 노출 등을 포함한 성적인 춤, 선정적인 분위기의 폴댄스나 곡예, 성행위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나 포르노 등의 성애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공유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이 외에도 성기노출, 항문노출, 모유수유를 제외한 젖꼭지가 노출된 개인의 가슴을 보여주는 여성 이미지는 콘텐츠 경고 대상임

ㅇ (성범죄자의 이용제한) 트위치는 2021년부터 성범죄, 극단주의, 테러활동 등에 최대 영구정지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하는 약관을 추가했으며, 서비스 밖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용계정 정지가 가능함

- 트위치의 커뮤니티 가이들인은 성폭력, 성착취, 미성년 착취, 폭력 및 위협, 괴롭힘, 성희롱, 저작권 위반 등의 다양한 불법콘텐츠의 게시에 대해서 이용계정 정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함

- 또한, 트위치의 서비스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도 이용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저지르는 성적 행위나 성폭행 또는 고의적인 공범 행위, 아동 그루밍,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자료 권유/배포 등 아동에 대한 성착취 등의 행위를 저지른 이용자의 계정에 대해서도 이용계정 정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함

[그림 3-8] 트위치의 범죄자 이용계정 제한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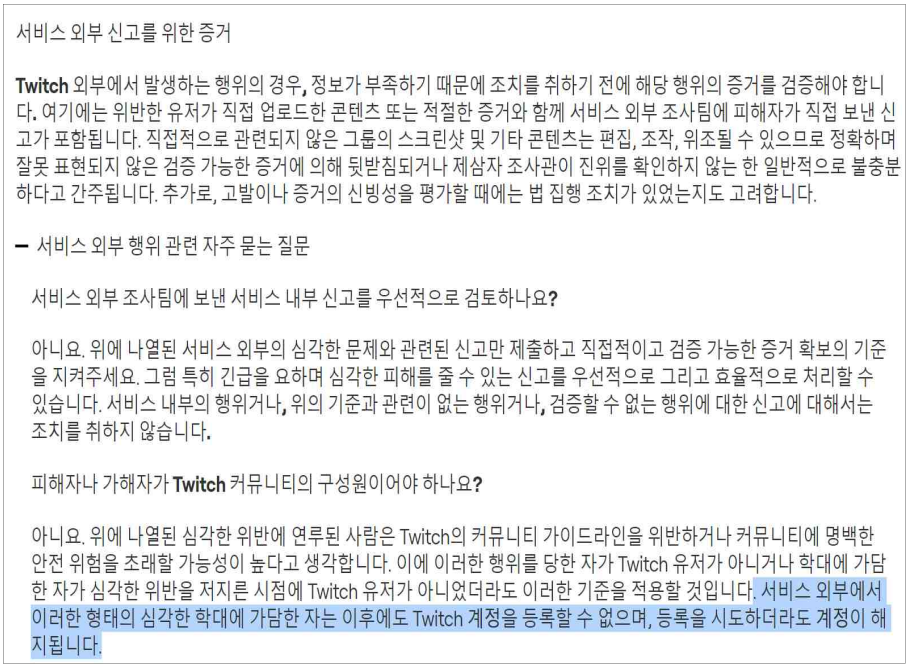

서비스 외부 신고를 위한 증거

Twitch 외부에서 발생하는 행위의 경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행위의 증거를 검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반한 유저가 직접 업로드한 콘텐츠 또는 적절한 증거와 함께 서비스 외부 조사팀에 피해자가 직접 보낸 신고가 포함됩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그룹의 스크린샷 및 기타 콘텐츠는 편집, 조작, 위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며 잘못 표현되지 않은 검증 가능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제삼자 조사관이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다고 간주됩니다. 추가로, 고발이나 증거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에는 법 집행 조치가 있었는지도 고려합니다.

– 서비스 외부 행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외부 조사팀에 보낸 서비스 내부 신고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나요?

아니요. 위에 나열된 서비스 외부의 심각한 문제와 관련된 신고만 제출하고 직접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 확보의 기준을 지켜주세요. 그럼 특히 긴급을 요하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신고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부의 행위거나, 위의 기준과 관련이 없는 행위거나, 검증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Twitch** 커뮤니티의 구성원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위에 나열된 심각한 위반에 연루된 사람은 Twitch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커뮤니티에 명백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를 당한 자가 Twitch 유저가 아니거나 학대에 가담한 자가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시점에 Twitch 유저가 아니었더라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서비스 외부에서 이러한 형태의 심각한 학대에 가담한 자는 이후에도 Twitch 계정을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을 시도하더라도 계정이 해지됩니다.

출처: 트위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 다만, 서비스 외부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의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야 하며, 직접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트위치가 구성한 조사팀(제3의 법률전문가)이 조사하여 이용제한 필요성을 검토함
- 일반적으로 계정정지가 해당 이용자의 영구적인 계정생성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각한 학대에 가담한 자는 이후에도 트위치 계정을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을 시도하더라도 계정이 해지”된다고 안내함

○ (아이디 사용제한) 또한, 트위치는 이용자의 아이디나 닉네임에 불법적이거나 성적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아이디를 무기한 이용정지 시키거나 아이디 재설정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그림 3-9] 트위치의 부적합 ID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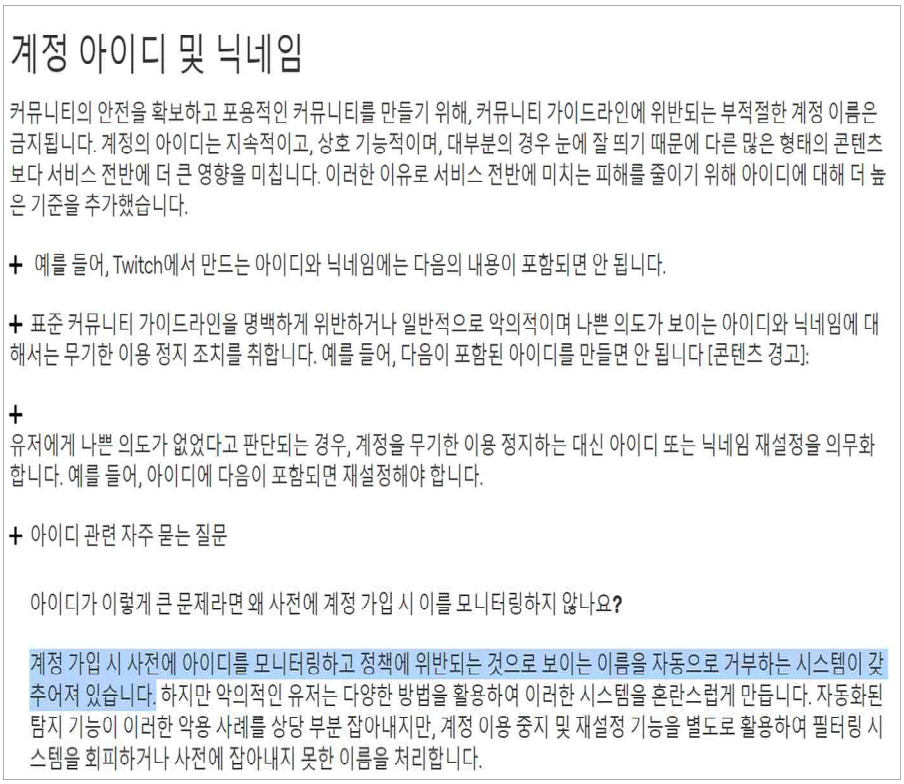

계정 아이디 및 닉네임

커뮤니티의 안전을 확보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부적절한 계정 이름은 금지됩니다. 계정의 아이디는 지속적이고, 상호 기능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다른 많은 형태의 콘텐츠보다 서비스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이디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 예를 들어, Twitch에서 만드는 아이디와 닉네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 표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악의적이며 나쁜 의도가 보이는 아이디와 닉네임에 대해서는 무기한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된 아이디를 만들면 안 됩니다 [콘텐츠 경고]:

+
유저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정을 무기한 이용 정지하는 대신 아이디 또는 닉네임 재설정을 의무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에 다음이 포함되면 재설정해야 합니다.

+ 아이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아이디가 이렇게 큰 문제라면 왜 사전에 계정 가입 시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나요?

계정 가입 시 사전에 아이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름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유저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동화된 탐지 기능이 이러한 악용 사례를 상당 부분 잡아내지만, 계정 이용 중지 및 재설정 기능을 별도로 활용하여 필터링 시스템을 회피하거나 사전에 잡아내지 못한 이름을 처리합니다.

출처: 트위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 아이디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들은 테러 및 아동착취 등 법률 위반, 폭력이나 위협, 혐오, 괴롭힘 및 성희롱, 개인정보 무단공유, 사칭, 자해, 약물, 성행위나 생식기 등에 관한 내용 등임
- 특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타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아이디나 타인의 성생활을 대상으로 한 모욕이 포함된 아이디나 닉네임 등의 경우 타인을 향한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아이디나 닉네임은 제한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음

- 따라서 닉네임이나 ID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롱 등 2차 가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됨
- 트위치는 자동화된 아이디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적합한 ID를 필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라. X(트위터)

ㅇ (콘텐츠 삭제) X의 운영정책상 게재가 제한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은 안전과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며, 세부적으로는 폭력, 사이버폭력 및 괴롭힘, 불법상품 및 서비스, 혐오, 개인정보 침해, 자살 및 자해, 가학, 비동의 성적콘텐츠, 아동성착취, 그리고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이 해당됨

- 이중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는 비동의 성적콘텐츠, 아동성착취, 불법촬영물이 포함됨
- 아래의 표와 같이 선정적인 콘텐츠, 성인 나체 이미지 및 성행위, 폭력적인 성행위, 수간 및 시간, 불필요한 폭력 등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민감한 콘텐츠로 분류되나, 교육목적이나 다큐멘터리 등의 일부로 포함될 경우 게재가 허용될 수 있음

<표 3-5> X(트위터)의 게재제한이 가능한 콘텐츠 유형과 예시

유형	예시
선정적인 콘텐츠	폭력적인 범죄 또는 사고 몸싸움 신체적인 아동 학대 혈액, 배설물, 정액 등의 체액 눈에 보이는 상처 등 심각한 신체 상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훼손된 동물
성인 나체 이미지 및 성행위	전체 또는 부분적인 신체 노출(성기, 엉덩이, 유방 확대 장면 포함, 모유 수유와 관련된 콘텐츠는 제외) 성적 행위 시뮬레이션 성교 또는 기타 성적 행위 - 사람이 등장하거나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동물을 묘사하는 만화, 음란 만화 또는 애니메이션에도 적용됩니다.

폭력적인 성행위	강간 및 기타 형태의 폭력적인 성폭행, 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동의 없음을 가장한 경우 포함) 이루어지는 성행위 성적인 폭력 -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당사자가 행위에 참여하는 데 동의했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수간 및 시간	인간과 동물 사이의 성적 행위를 묘사 인간과 인간의 시체 사이의 성적 행위를 묘사
불필요한 폭력	절단되거나 훼손된 인체 까맣게 타거나 그을린 유해 내부 장기 또는 뼈의 노출 동물 고문 또는 살해

ㅇ (신고접수체계) X에 게재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① 누구나 신고 가능한 콘텐츠 유형과 ② 피해당사자가 신고 가능한 콘텐츠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동의를 얻지 않은 신체 노출 콘텐츠"와 관련해서 누구나 신고 가능한 콘텐츠의 유형은 ① 영리목적의 불법촬영물[2], ② 피촬영자의 피해나 복수를 바라는 문구[3], ③ 피촬영자와의 연락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4] 등이 해당됨
- 이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신체 노출 콘텐츠"는 피해당사자나 피해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음
- 국내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게재될 경우, 신고접수를 통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안전 및 사이버 범죄>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섹션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음
- 불법촬영물등을 업로드할 경우 트위터에 의해 콘텐츠 삭제·접속 차단 등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게시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음

---

2) 불법촬영 또는 치마속 촬영 등 동의를 얻지 않은 신체노출 미디어 콘텐츠에 대가로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는 콘텐츠

3) X가 제시한 예시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당신이 마땅한 벌을 받았으면 한다." 등의 문구임

4) X가 제시한 예시는 "1234567번으로 연락해 저의 전 연인에게 소감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임

- 게재제한 대상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삭제, 공개 범위 제한, X에 대한 액세스 중단 또는 법적 조치와 같은 시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안내함

[그림 3-10] X의 민감한 콘텐츠 등에 대한 신고 메뉴

출처: x.com

ㅇ (아동 성착취 콘텐츠) 아동성착취나 극단적인 성묘사, 명백하게 불법촬영물 등으로 신고된 콘텐츠 등은 게재가 허용되지 않음

- 게재 제한 대상 콘텐츠의 세부 유형은 ① 아동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또는 성적 암시를 주는 행동에 참여하는 시각적 표현, ② 성적으로 노골적인 상황에 있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아동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 생성 미디어, 또는 기타 형식의 자료, ③ 유명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관련되거나 이를 대상으로 작성한 성적 코멘터리, ④ 아동 성 착취 자료를 호스팅하는 제3자 웹사이트로의 연결 링크 등이 해당됨

ㅇ (성인 대상 성적 콘텐츠) 명백한 성착취 영상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영상물은 게재제한되는 콘텐츠로 안내하고 있으나, 성인대상 성적 묘사, 영상물의 등장인물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 음란물 등이라면, X의 커뮤니티 규정 상 민감한 콘텐

츠로 분류되어 게재할 수 있음

- X는 '민감한 콘텐츠 계정'으로 설정할 경우, 음란물이나 성행위, 성인 대상 성적묘사 등의 콘텐츠까지도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민감한 콘텐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계정보유자가 자신의 계정을 민감한 콘텐츠 계정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해당 콘텐츠는 실시간 동영상, 프로필, 헤더, 리스트 배너 이미지 또는 커뮤니티 커버 사진 등 눈에 잘 띄는 부분에는 노출되지 않음
- 또한, 제3자가 해당 이미지 및 동영상을 보기 전에 해당 콘텐츠가 민감한 콘텐츠임을 알리는 경고 문구가 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시청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접근에 제한이 없음
- 다만, 2019년 11월부터는 자체적인 정책인 "동의를 얻지 않은 신체 노출 콘텐츠 관련 정책"에 따라 영상물이나 이미지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배포된 사적인 사진과 동영상 게시는 제한되는 콘텐츠로 명시되어 있음
  - X가 게재를 제한하는 비동의 성적콘텐츠의 유형은 ① 전체 신체 노출, 부분적인 신체 노출 및/또는 성적인 행위가 담긴 몰카 콘텐츠, ② 도촬 또는 치마속 촬영 - 타인의 성기나 엉덩이, 유방을 볼 수 있도록 치마/드레스 또는 기타 의복 안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촬영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③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에 겹치거나 그 외의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④ 사적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목적 없이 촬영된 이미지 또는 동영상, ⑤ 사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에 대한 현상금 또는 금전적 보상 제공 등을 금하는 콘텐츠 등이 포함됨

ㅇ (이용제한) X의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 등에 성범죄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X의 서비스 내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하면 계정이 영구 정지됨

- 성범죄자에 대한 계정 개설을 금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비동의 사적 이미지나 영상물의 최초 게시자로 확인된 모든 계정과 비동의 사적 이미지와 영상만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계정은 영구적으로 정지함

2.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관련 규정

가. 네이버

ㅇ (삭제대상 콘텐츠) 네이버 이용약관은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다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금지된다고 안내함

- ① 타인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게시물, ②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게시물, ③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게시물 등을 금지한다고 안내함
- 다만, 이용 약관상에서는 포괄적으로'게시물 게재나 네이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만 안내되어 있어,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제재 수준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음
- 게시물의 내용에 따른 제재조항은 '게시물 운영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때 성적 수치심, 왜곡된 성 의식 등을 일으키는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된다고 안내함
-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정책을 위반한 게시물은 신고를 통해 즉시 삭제되며, 게시자의 계정은 글쓰기 및 로그인 제한, 서비스 이용이 해지된다고 안내함

ㅇ (성적 학대 관련 콘텐츠) 게재 제한이 되는 콘텐츠의 내용은 성기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노골적인 묘사,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등이 포함된 게시물임[5)]

- 게시물 정책에 따르면, 성기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거나, 성폭력행위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유사성교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거나, 아동성착취 및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게재를 제한한다고 명시함
-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 아동 청소년의 사진을 성적

---

5) 네이버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의 게시물 운영정책, https://policy.naver.com/policy/service_group.html

인 사진과 합성하거나 성적 괴롭힘으로 보이는 내용,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돕는 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행위를 제공하는 내용,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매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불법적 내용이 게재제한 대상 콘텐츠로 규정됨

- 네이버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와 성을 대상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인격화하는 게시물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삭제하며, 게시자의 계정은 글쓰기 및 로그인 제한, 서비스 이용이 해지될 수 있음

ㅇ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 등)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한 정보나,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롱이나 2차 가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제 조항은 발견할 수 없고,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나 관련 가해성 콘텐츠는 타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임시조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ㅇ (계정정지 또는 해지)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나 약관 및 정책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만 계정정지 또는 해지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음

- 네이버의 '계정정책'에 따르면, 관련 법령,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을 위반할 경우 주의, 또는 서비스 일부나 전부에 대해 이용제한을 할 수 있음
- 다만, 계정정지의 정확한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며, 성범죄자의 이용제한에 관한 조항은 부재함
- 네이버 운영정책 상 범죄·범죄인 등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2022년 2월자 한겨레 기사(강재구, 2022. 2. 4.)에 따르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성범죄자의 네이버 블로그가 차단된 바는 있으나, 성범죄자의 이용제한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블로그의 내용 중 운영정책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조처가 시행된 것임

-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네이버 상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만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성범죄자의 전과여부에 따라 계정생성 및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음

나. 카카오

○ (삭제대상 콘텐츠) 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공유 등의 불법 및 유해 콘텐츠는 게재 제한 또는 삭제 대상임

- 카카오 운영정책은 음란한 내용의 게시와 유포 및 사행성 도박 홍보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 등은 금지 콘텐츠로 안내하고 있음
- 성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콘텐츠로 제한되는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 유인하거나 이를 모의, 조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이용제한) 운영정책에 따르면 법령이나 약관, 운영정책을 위반한 이용자의 경우 계정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음란한 내용의 게시와 유포 및 사행성 도박 홍보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서비스 이용제한의 대상임

- 관련 법령, 관련 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정의 생성·이용·탈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통합서비스의 전체 이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함
-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도 불법적인 음란· 도박 정보 유통 등 명백한 불법행위 및 카카오톡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협하는 악의적인 서비스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 될 수 있다고 안내함
- 계정이 이용제한이 되면, 메시지 수신/발신 제한, 대화방 입장/검색 제한, 톡 게시판 및

채널 댓글 사용 제한, 카카오톡 가입 및 탈퇴 제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함

ㅇ (성범죄자 이용제한) 성범죄자의 이용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성범죄자를 시도한다고 신고가 들어온 이용자와 성범죄자의 인적정보를 사용하는 프로필의 이용을 제한함

- 성범죄자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거나,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오픈채팅방을 생성·운영하거나,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함
- 성범죄자 관련으로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에 대한 접근 및 사용제한, 오픈채팅 홈 검색 결과 노출 제한, 게시글 노출 제한 등이 적용됨
- 다만 성범죄자 관련성에 대한 확인은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확인하며, 신고접수 이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함

ㅇ (신고삭제체계)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는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법령과 운영정책에 따라 게재제한, 접근제한, 계정의 이용제한 등을 적용함

-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 따돌림, 괴롭힘 등 사이버 폭력,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등, 자살 및 자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으로 구분함
- 운영정책을 위반한 콘텐츠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있는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운영정책 제5조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 일반적인 사생활 및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 신고의 경우, 신고요건 및 내용 확인 단계에서 게시자의 권리소명이 필요하므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됨

[그림 3-11] 카카오가 안내한 신고접수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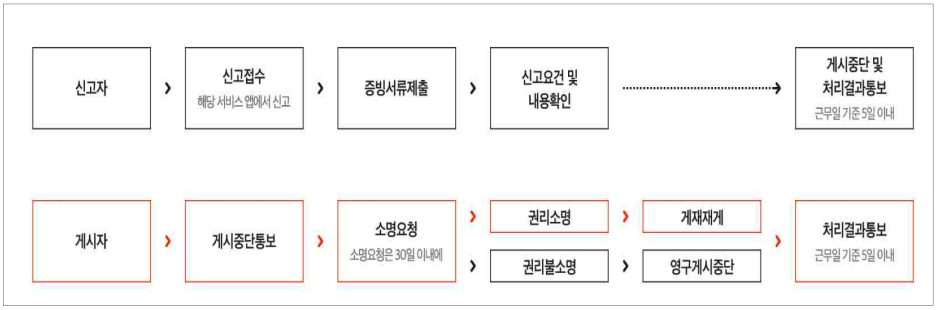

[그림 3-12] 디시인사이드의 콘텐츠 관련 이용자 신고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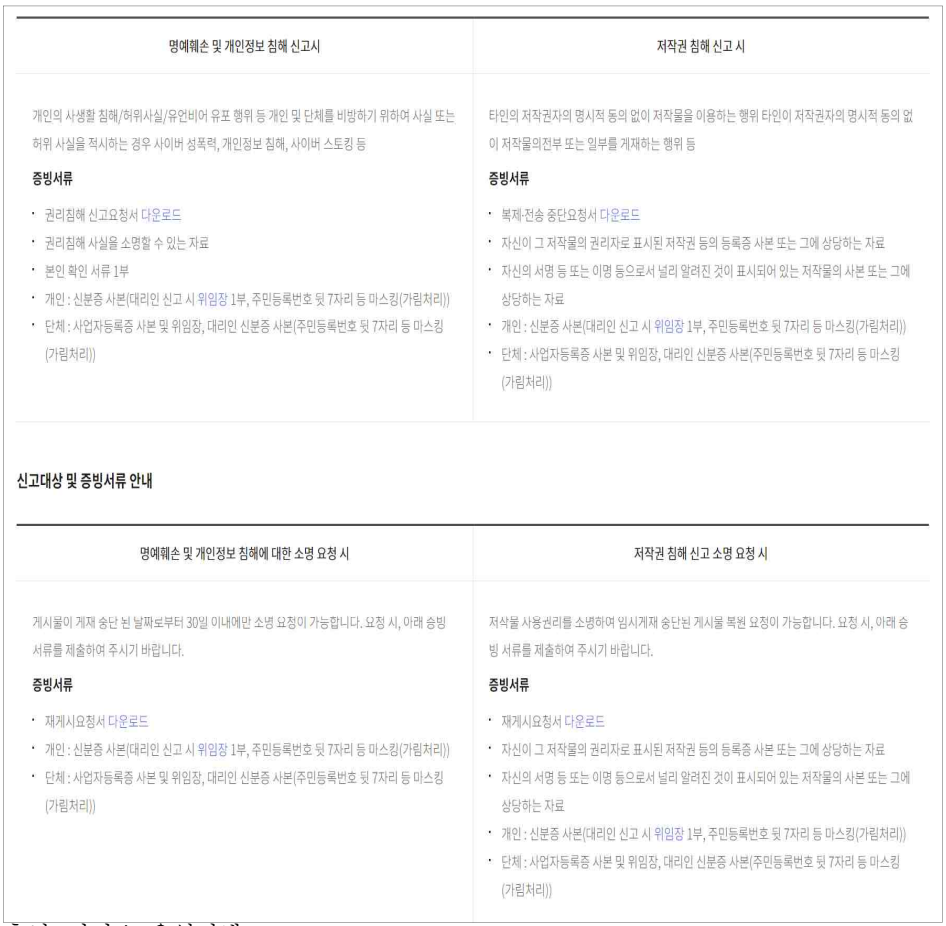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허위사실/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 개인 및 단체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이버 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스토킹 등

증빙서류

- 권리침해 신고요청서 다운로드
-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확인 서류 1부
- 개인 :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가림처리))
-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가림처리))

저작권 침해 신고 시

타인의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타인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의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 등

증빙서류

- 복제·전송 중단요청서 다운로드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서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개인 :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가림처리))
-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가림처리))

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소명 요청 시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소명 요청이 가능합니다. 요청 시, 아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재게시요청서 다운로드
- 개인 :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가림처리))
-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가림처리))

저작권 침해 신고 소명 요청 시

저작물 사용권리를 소명하여 임시게재 중단된 게시물 복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요청 시, 아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재게시요청서 다운로드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서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개인 :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가림처리))
-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가림처리))

출처: 카카오 운영정책.

다. 디시인사이드

ㅇ (콘텐츠 삭제)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없으나, 약관 제7조에 불법정보를 포함한 정보들을 게재할 경우 게시물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함

- 약관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제한)에 따라 디시인사이드는 회원이 게시한 음란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각 호의 동일 사례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음
- 디시인사이드는 약관상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커뮤니티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음

[그림 3-13] 디시인사이드의 게시물 삭제 또는 이용제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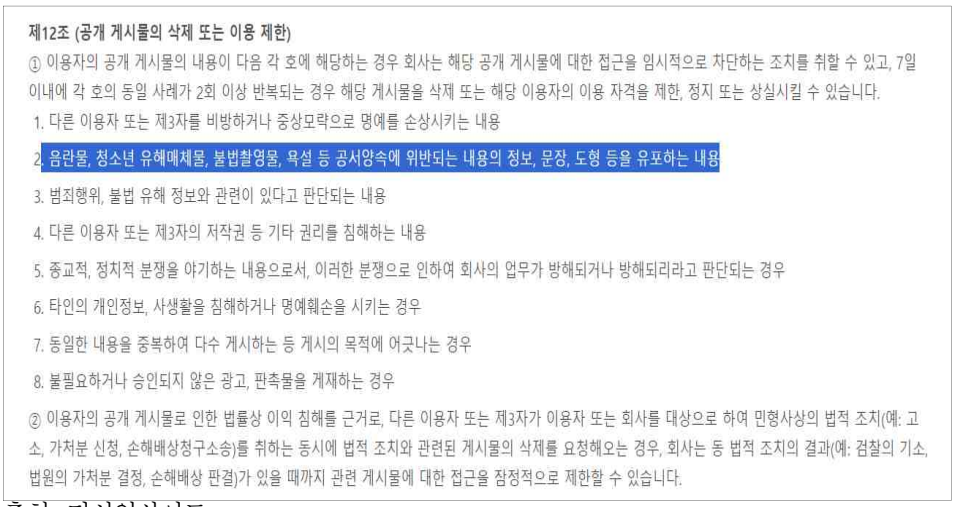

제12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제한)

①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공개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각 호의 동일 사례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음란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불법촬영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 불법 유해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중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6.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시키는 경우
7.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8.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②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손해배상 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디시인사이드.

ㅇ (이용제한) 성범죄자의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용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이용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이용약관 제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에 따라,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회원등록 말소가 가능함

- 약관 제11조(회원의 의무)는 법령에 따라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할 경우 약관 제6조에 따라 회원등록 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함
- 회원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회원의 게시물 중 개인 영역에 등록된 게시물(마이로그, 방명록 메뉴 등)은 일체 삭제되나, 커뮤니티 서비스, 기타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음

3. 시사점

○ (영상물 삭제절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조치의무사업자들은 성범죄피해 영상의 삭제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삭제요청기관 이외의 신고접수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대리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사업자라도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되어, 국내법 상 불법촬영물로 분류되는 성범죄피해 영상의 삭제 및 필터링이 의무화됨
-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불법촬영물이라면 성적 표현의 정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음란물로 분류되어 시정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

○ (비영상물 삭제)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 정보에 대해서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반면, 국내 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시조치를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법령에서 정한 삭제요청기관을 통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므로 신속한 삭제는 어려움
- 국내의 경우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임시조치가 적용된

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에는 삭제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고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임의성 우려가 있음

- 성범죄피해자의 신원정보나 사생활 침해정보, 피해자에 대한 조롱 등의 정보는 사업자마다 삭제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불법성의 판단을 사업자가 하는 글로벌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판단에 의존해야 함
-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일반적인 개인정보나 명예훼손과 동등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삭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ㅇ (성범죄자의 이용제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재유포 및 재범 우려가 있어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밖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게시글 작성이나 공유를 제한한다거나 이용계정 자체를 정지하는 경우가 있음

-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보도나 법원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url 링크를 제출할 경우,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있음
- 트위치, 메타의 경우 이용약관에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 자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구글과 X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계정을 비활성화 하지는 않으나, 자사의 서비스를 통해서 불법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계정의 영구정지를 실시함
-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는 성범죄자의 계정 개설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성범죄자를 사칭하거나 범죄자를 옹호 및 미화하는 계정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ㅇ (약관·커뮤니티 규정) 글로벌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는 약관 및 커뮤니티 규정에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관리 기준이 공개되지 않음

- 정보의 불법성 판단을 사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해외의 법령체계로 인해 글로벌 사업자들은 자사의 약관 및 커뮤니티 규정 등에 콘텐츠 관리 기준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

어 있으며,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불법정보의 삭제 및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책임이 처리됨

- 정보의 불법성 판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국내의 법령체계에서는 국내 사업자들은 불법성 판단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사의 약관 및 커뮤니티 규정도 국내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만 제공됨
- 이용자 측면에서는 국내의 체계가 불법정보 노출의 가능성이 낮아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책임의식과 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불법정보를 모니터링/심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제 4 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제1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회 추진 현황

1. 협의회 구성 및 추진동향

○ (배경) 효율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범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목적으로 협의회가 2022년 9월에 구성됨

-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에 범부처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해왔으나, 글로벌화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범부처 및 민관협의회가 구성됨

○ (협의회 구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회 및 민관협의회가 구성됨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로 참여하는「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함
- 또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관한 정부와 민간 간의 체계적이고 양방향적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자, 민관 협의회를 구성함
- 민관 협의회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부처 과장급-민간 임원급으로 구성했으며,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담당과장,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업자 임원,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함

[그림 4-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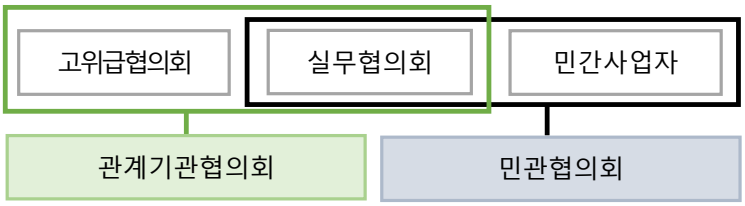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2. 12. 7).

○ (추진 동향)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무회의와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추진

-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무회의와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에 민간 플랫폼 사업자까지 참여하는「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임
- 2022년 12월에 5개 부처가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협력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함
- ‘민관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간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을 포함한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추가 협력방안 등의 필요성을 논의함

2. 협의회 논의 과제 현황

○ (추진실적) 2020년에 범부처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①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도 정비, ②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차단 강화 및 피해자 지원 강화, ③ 디지털성범죄 수사 강화, ④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추진함

<표 4-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범부처 추진실적

추진분야	추진실적
1.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도 정비	1-1.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 디지털성범죄 처벌규정 강화·신설(성폭력처벌법, '20.5월)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개념을 '성착취물'로 변경(청소년성보호법, '20.6월)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 신설(청소년성보호법, '21.3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출·수입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청소년성보호법, '21.3월)
	1-2. 디지털성범죄 관리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청소년성보호법, '20.5월) -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청소년성보호법, '20.5월) -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20.12월)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 도입(청소년성보호법, '21.3월) -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20.6월) - 주요 인터넷사업자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정보통신망법, '20.6월)
2.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차단 강화 및 피해자 지원 강화	2-1. 잊힐 권리 강화를 위한 삭제·차단 실시 -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을 통해 심의기간을 단축('20~) - 범부처 공공 DNA DB를 구축·표준 필터링 기술 개발 및 배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삭제 근거 마련 및 편집·합성물 삭제지원 확대('21.1월)
	2-2. 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18~) - 지역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지정·운영('21~) - 성폭력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 변경 지원(주민등록법, '22.1월)
3. 디지털성범죄 수사 강화	- 사이버성폭력 집중단 실시 - 아동청소년대상 사이버성폭력 범죄 위장수사 실시('21.9월)
4. 대국민 인식개선 추진	-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제작·배포('20.4월) - 디지털성범죄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확산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추진

출처: 관계기관 합동(2022. 12.)

○ (협의회 논의 과제) 2022년 12월의 관계기관 협의회는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① 디지

털성범죄 삭제 지원, ②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④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함

<표 4-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과제

추진분야	과제명	소관
1.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1-1.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방통위, 여가부 검찰청
	1-2.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기관 확대	방통위
	1-3. 중앙·지방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여가부, 법무부
	1-4.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및 기관간 연계	경찰청
	1-5.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관계기관 공동대응체계 운영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검찰청
2.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	2-1.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차단 및 범죄수익 박탈	검찰청
	2-2.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경찰청
	2-3. 디지털성범죄물 대응 국제공조 강화	방통위
	2-4. 디지털성범죄 및 유통 단속 및 법집행 강화	경찰청, 검찰청, 방통위
	2-5.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 강화	방통위
	2-6. 디지털성범죄 예방 소프트웨어 보급	방통위
	2-7. 가상공간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방통위, 법무부, 여가부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	3-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가부, 법무부 검찰청
	3-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기능강화 및 기관간 연계강화	법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검찰청
4. 대국민 인식개선 추진	4-1. 대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추진	여가부, 방통위

출처: 관계기관 합동(2022. 12.)

제2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1.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강화 방안

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 (목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지급예산 확대 및 지급상한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효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함

○ (현황)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신고에도 포상금 지급

- 2020년 4월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확실한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됨
-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20. 6. 2.)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상 제8조(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 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1조(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제13조(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4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등에 대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표 4-3>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포상금)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고소 · 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제31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범죄별 지급액에 따라 100만원 이내 지급되며, 최저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됨
-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성범죄 신고결과 피의자가 신고대상 범죄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지급되며, 여성가족부가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내용을 확인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그림 4-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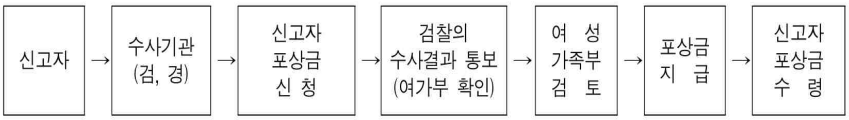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ㅇ (유사사례)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위조상품판매 등 일상생활속 불법행위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표 4-4>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현황

불법행위	포상금액
담배꽁초투기	최저3천원, 최고5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	최저3만원, 최고3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최저100만원, 최고500만원
위조상품 판매	최저300만원, 최고1,000만원
가짜석유 제조/판매	최저10만원, 최고 1,000만원
불법게임물 유통	최저10만원, 최고 50만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최저30만원, 최고100만원
보험범죄	최저100만원부터 최고 1,500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0.5%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최저700만원, 최고2,000만원

○ (문제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홍보부족 및 낮은 포상금으로 인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함

- 2012년3월~2022년3월까지 약 10년간 여성가족부의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총 65건, 4,790만원의 포상금만 지급됐으며, 연간 예산도 1,500만원만 배정되어 최대 지급액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15건 이상은 포상금 지급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최윤아, 2022. 6. 28.)

- 또한 현행 포상금 지급 상한은 영리목적 유통 등의 경우 30만원, 성매매의 경우 70만원, 강간 등 성폭력의 경우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쓰레기 불법 투기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타 범죄신고 포상금 수준과 비교할 때 최저 수준임

<표 4-5>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범죄와 지급규모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 범죄	포상금 규모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100만원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되게 하는 범죄	
제15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제8조의 2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 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추행)거나 해당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범죄 (2019.7.16 시행)	
제11조의1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2020.6.2.시행) 제11조의4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2020.6.2.시행)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70만원
제11조의2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2020.6.2.시행)	30만원

- 더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를 확인하고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호제5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고가 어려운 상황임

<표 4-6>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해결방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상한(최고 100만원)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홍보를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효화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재 100만원보다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연간 예산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확대가 필요함

  * 민간 시민운동가인 '허(활동명)'는 <허들을 넘는 여자들>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한 바 있음(최윤아, 2022. 6. 18.)

[그림 4-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를 위한 민간 홍보 활동

출처: 최윤아(2022. 6. 18.)

-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단순 목격자가 해당 영상물의 유통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호제5항에 따른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함

나. 디지털성범죄 긴급심의의 법률적 근거 강화

○ (목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에 성적 허위영상정보 및 피해자 신고 및 사생활 노출 정보에 대한 긴급심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삭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황) 「방통위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제22조제4항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의 긴급 심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제24조의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 등에 대한 긴급심의에 대한 근거 부재

- 「방통위설치법」제22조제4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에 대해 대면심의 없이 서면으로 긴급한 심의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함
-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적 불법촬영물 이외에도 성적허위영상정보 및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가 디지털성범죄로 규정되며, 긴급심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설치법」제22조제4항에 반영되지 않음

<표 4-7> 「방통위 설치법」 제22조제4항 개정안

제22조(회의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해결방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제24조의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 등에 대한 서면심의·의결의 법률적 근거 마련

<표 4-8> 「방통위 설치법」 제22조제4항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2조(회의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제22조(회의 등) ④ _____ _____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 제14조의2에 따른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제24조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

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2.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방안

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 실효화

○ (목표) 현행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 사항을 개선하여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실효화하고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부담을 완화함

○ (현황) 201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상권 제도가 도입됨

- 2017년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3월에 불법촬영물의 영상삭제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

  * 「성폭력방지법」 개정('18.3.13.), 시행('18.9.14)

- 동법 제7조의3제4항은 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5항은 국가가 삭제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사후적으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안은 동조 제6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상황임

<표 4-9>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및 시행령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시행령 제2조의6제6항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구상금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부과하고, 동조 제7항은 가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ㅇ (문제점)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은 국가가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 정보에 대한 요청 권한 규정 미비로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가 어려움

-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김민지, 2023; 채윤정, 2019. 2. 13.; 최현재, 2020. 3. 29; 뉴시스, 2020. 10. 27.)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구상권 행사가 이뤄진 적은 한 건도 없음

- 현재까지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해 구상비용이 청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① 구상금액 산정안의 부재, ② 구상권 행사를 위한 정보 조회 및 처리에 관한

권한 규정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음(김민지, 2023; 박복순, 2018)

- ① 구상금액 산정안 부재:

  • 불법촬영물 삭제에 사용된 비용은 불법촬영물의 유포 범위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전에 구상금액을 산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 법률로써 규정한 바가 없어 구상권 청구에 한계가 있음

  * 「가정폭력방지법」의 '치료보호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범죄피해구조비' 등 타 피해지원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은 국가가 사전에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상비용 산정이 필요하지 않음(박복순, 2018)

  • 이에 박복순(2018)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서비스'의 삭제인력의 시간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피해자 1인당 소요된 시간을 산출하여 비용을 산정하거나,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비용의 표준단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함

  • 현재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 비용 산정의 현실적 방안 등 구상권 행사를 위한 보완사항 검토를 2023년도 업무 시행계획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구상권 행사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중에 있음

- ② 정보 조회 및 처리에 관한 권한 규정 부재

  •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성폭력 행위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구상권 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및 처리에 관한 권한 규정이 부재함

  • 범죄경력조회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정보 조회 및 처리에 관한 권한 조항이 「성폭력방지법」에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두 건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각각 20대(의안번호 2023533,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와 21대(의안번호 210701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전자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종료되고 후자는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임

• 2019년 10월 31일에 발의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023533)은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정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삭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표 4-10>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023533)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의 삭제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제7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0년 12월 30일에 발의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017)은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정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부여하되, 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표 4-11>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017)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생략)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생략)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
<신 설>	⑤ 여성가족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생 략)	제35조(권한의 위임 · 위탁) (생 략)
<신 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해결방안) 구상권의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①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방안을 발굴하고, ② 「성폭력방지법」에 행위자의 정보조회 및 처리에 관한 권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상금액 산출방안 발굴

  • 구상권 행사를 위한 권한을 명시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두 건(의안번호 2023533, 의안번호 2107017) 모두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구상권 청구의 구체적인 산정방안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음

  • 시행령 제2조의6제6항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구상금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가해자

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정방안 마련이 필요함

- ② 「성폭력방지법」상 정보조회 및 처리에 관한 권한 규정 마련

  • 2020년 12월에 발의되었으나 여가위 소위에 계류되어 입법이 무산된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정보 조회 및 처리에 관한 권한 조항 마련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을 설치하고, 구상권 청구의 권한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위임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나. 성범죄자의 SNS 사용 및 계정 개설 금지 지원

○ (목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압수 및 삭제되지 못한 불법촬영물 등의 원본 및 사본 영상의 재배포 가능성을 방지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인한 재등록률[6]은 64.1%,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재등록률은 22.4%, 불법촬영물 범죄자의 성착취물 제작배포 재등록률도 23.9%로 디지털성범죄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음(2023년 성범죄백서)

○ (현황)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은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치는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 자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구글과 X,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자사의 서비스 밖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6) 재등록 사건이라 함은 기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기간 중 재범판결 확정으로 인해 추가 등록된 사건을 의미함(2023년 성범죄백서, P.5)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자사 서비스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불법정보 게재가 반복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함

-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재유포 우려가 높아, 일부 플랫폼들은 사전적인 조치로 이용제한을 적용하고 있음

<표 4-12>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성범죄자의 이용 제한관련 규정 현황

주요 사업자	성범죄자 이용제한 관련 규정 존재 여부
트위치	이용약관에 서비스 밖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이용계정 정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함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에 성범죄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성범죄자로 확인 된 경우 해당 계정을 비활성화 하고 있음
X(트위터)	성범죄자의 이용제한 규정은 부재하나, 불법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거나 X의 서비스를 통해 최초유포할 경우 계정의 영구 정지가 가능함
구글(유튜브)	90일 동안 3번 이상 콘텐츠 정책 위반 경고를 받은 채널이나 계정에 대한 영구 정지가 가능함
네이버	범죄나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미화하여 조장하는 이용자의 계정이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
카카오	성범죄자를 사칭하거나 옹호하는 이용자의 계정이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

○ (해외사례) 미국은 성범죄 등록대상자의 인터넷 식별부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SNS사업자와 공유하고 있음

- 미국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주소, 직장, 학교, 차량, 인터넷 식별자 등의 정보를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고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해당 규정이 포함된 「성범죄자의 인터넷 이용 제한을 위한 법률 (Keeping the Internet Devoid of Sexual Predators Act of 2008: 일명 KIDS Act)」에 따라 성범죄자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나 닉네임 등의 인터넷 식별자를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에 제공해야 하며, 성범죄자가 인터넷 식별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즉시 고지할 의무가 발생함

- 해당 법률이 SNS사업자에게 성범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가입을 금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SNS사업자가 성범죄자의 인터넷 식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서비스 사용자 중에서 성범죄 등록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범죄자의 SNS남용을 제한할 수 있음
- SNS사업자들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사의 서비스 사용자 중 성범죄등록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성범죄자가 제출한 ID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성범죄자의 모든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된 바 있으나 현재는 위헌으로 폐지되어, 성범죄자의 SNS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09년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제정한 바 있음[7)]
- 이 법은 성범죄자 등록제에 등록된 사람들은 미성년자가 회원이 되거나 개인 웹 페이지를 만들거나 유지할 수 있는 상업용 소셜 네트워킹 웹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함

<표 4-13>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성범죄자의 상업적SNS웹사이트 사용금지 법조항

§ 14 202.5. 성범죄자의 상업적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사용 금지 (a) 범죄. - 제14장 27A조에 따라 등록된 성범죄자가 미성년 자녀의 회원 가입이나 생성 또는 유지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업적인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불법이다. (b)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상업적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는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1)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가입비, 광고 또는 기타 소스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2) 우정, 다른 사람과의 만남 또는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두 명 이상의 사람 사이의 사회적 소개를 촉진하는 경우 (3) 다른 사용자나 웹 사이트 방문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친구나 동료의 상업적 소셜 네트워킹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사용자의 이름이나 닉네임, 사용자가 개인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진, 사용자에 대한 기타 개인정보, 기타 개인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등의 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 또는 개인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

7) 2009년 노스캐롤라이나 법 제14장 - 형법 § 14-202.5.

(4) 사용자 또는 방문자에게 게시판, 채팅방, 전자 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신저와 같은 다른 사용자와 통신할 수 있는 상업용 소셜 네트워킹 웹 사이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경우

(c) 상업용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포함되지 않는다.

(1) 사진 공유, 전자 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채팅방 또는 게시판 플랫폼 등 개별 서비스 중 하나만 제공하거나

(2) 회원 또는 방문자 간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업 거래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경우

(d) 관할권. - 범죄를 구성하는 전송이 해당 주에서 발생했거나 해당 주에서 수신된 경우,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범죄는 해당 주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본다.

(e) 처벌. -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1급 중범죄이다. (2008-218, s. 6; 2009-570, s. 4.)

- 그러나, 해당 법률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7년 6월 19일에 SNS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폐지됨[8)]

- 이 법률은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러나 패킹햄(Packingham)이라는 성범죄자가 페이스북을 사용한 것을 발견되어 기소되었으나 이 법률이 자신의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이 인터넷에서의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을 무효화함

ㅇ (문제점) 국내 성범죄자의 전과 및 판결기록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범죄자의 계정 비활성화 정책이 실효적 운용되지 않음

- 디지털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전의 범죄에서 미압수된 성착취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재유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자의 주요 SNS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8) Packingham v. North Carolina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성범죄자의 상업용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접근을 금지하는 North Carolina의 GS 14-202.5 조항을 파기 했다.

- 국내의 경우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으로 인해 언론보도에서 가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법원 판결물 검색 사이트 링크나 사건번호를 제공해도 본인인증 등의 복잡한 접근 절차로 인해 해외사업자들의 범죄자 실명 확인이 활성화되지 않음
- N번방 가해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주빈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와 구글 유튜브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실명확인이 쉽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경우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임
- 또한, 실명이 알려진 성범죄자들 중에서도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이 혼재되어 있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그림 4-4]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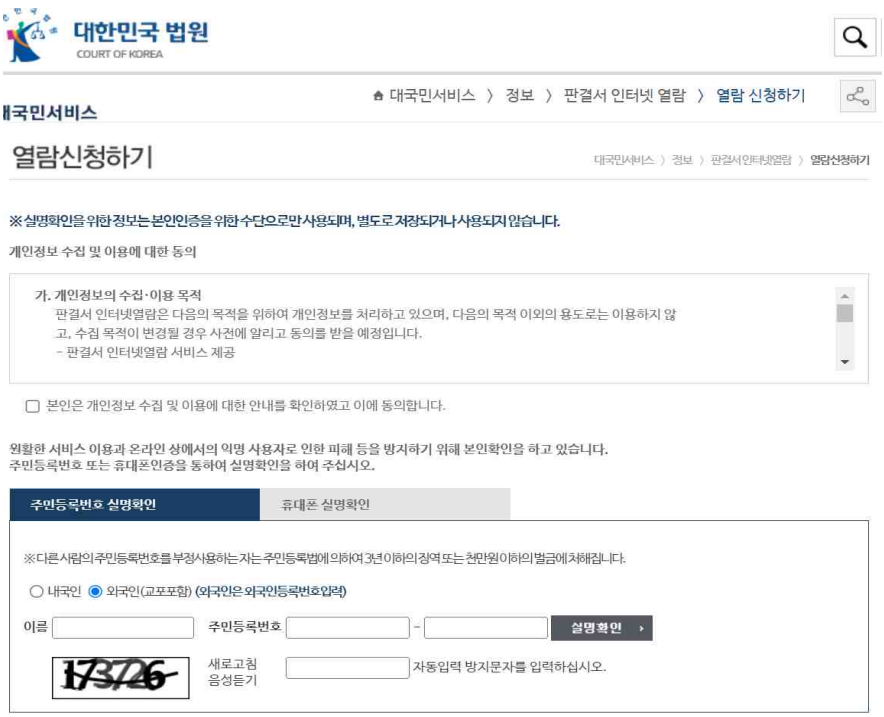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 법원

ㅇ (해결방안) 주요 SNS사업자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성범죄자 식별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성범죄자의 계정 비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

- 1안) 해외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또는 휴대폰 실명확인 없이도 성범죄 판결문을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
  - 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사이트[9]의 로그인 시스템 개선으로 성범죄 판결문의 URL로 접근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실명확인 없는 접근을 허용하거나,
  - 조치의무사업자 등 자격있는 사업자 전용 로그인 ID를 제공하여 판결문 확인의 편의성을 제공함
- 2안) 성범죄자의 인터넷 식별자 등록 의무화 및 정보 공유
  -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알림e[10]'에 성범죄자의 인터넷식별정보(이메일, 인터넷 접속IP, 주요 SNS의 ID 등) 등록을 의무화하고,
  - 법무부가 인터넷식별정보를 주요 SNS사업자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임(2023년 성범죄백서, P.14). 현행 등록정보의 범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의 신상정보와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임.

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ㅇ (목표) 성범죄자가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및 보호책임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기관에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함

---

9) 대한민국법원,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10)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 (현황) 현재 국내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됨

<표 4-14>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간등에의 취업제한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취업제한 대상자와 기간은 법원이 결정하는데, 법원이 대상자를 결정하면 법무부가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등록하며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등에 고지하고 있음

[그림 4-5] 성범죄자 범죄경력정보 등록·공개·고지 업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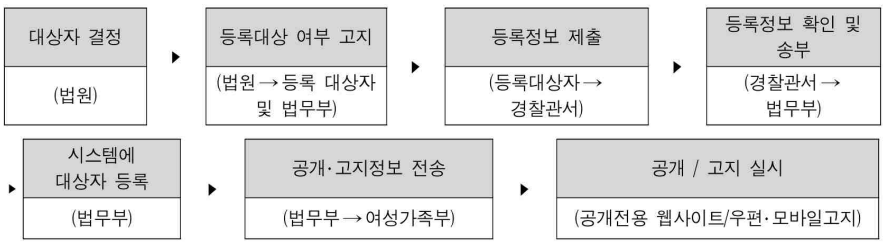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으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음(여성가족부, 2023)

- 취업제한 대상시설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서 점차 확대되어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고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가능한 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취업제한 기관은 약 56만 개소로 추정됨(여성가족부, 2023)

<표 4-15>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시행연도	제재내용
'10.1.1.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체육시설
'12.8.2.	의료기관(의료인)
'13.6.19.	경비업, 일반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등
16.11.30.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17.12.29.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
'18.7.17.	장애인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18.9.14	아동 · 청소년이 이용하는 지자체 공공시설 및 지자체 교육기관
'20.5.2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10.1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복지시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운영 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이 경찰서에 조회하여 직접 성범죄경력회신서를 제출

하거나 기관장이 성범죄 이력 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있음

* 취업제한 대상자 및 채용 예정기관은 경찰청 온라인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이용하여 범죄경력회보를 요청하고, 경찰관서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신하고 있음

-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 기관은 연1회 이상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및 확인결과는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취업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표 4-1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시 제재 규정

조항		제재내용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법 제58조)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해임요구 불이행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1차 위반 : 600만원, 2차 위반 : 8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문제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정보통신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웹하드나 부가통신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질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배제에 관한 조항이 없음

- 이러한 법률적 공백으로 인해 과거에 성착취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성범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가 청소년보호를 책임지고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할 우려가 있음

<표 4-17>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 · 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를 들어, 웹하드를 통해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한 양진호의 경우 2023년 1월 12일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으나, 현행 법령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웹하드나 부가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물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장이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타 기관들과 달리 아동·청소년과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차이점은 있음
- 그러나 제56조의 취업대상기관의 종사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이 필요한 기관의 종사자들과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종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등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임할 경우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의 실효적인 예방 차원에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해결방안)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장을 포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가 있는 일일 이용자수 및 매출액 기준 일정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로의 취업을 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26호 신설)

<표 4-18>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이하 생략)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1. 26.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에 따르면,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가 해당됨

라.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의무 강화

○ (목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을 받은 신고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함

○ (현황) 현행 법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영상을 삭제하거나 필터링 검출 영상을 삭제할 의무만 부과받고 있으며, 불법영상물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음

- 현행 체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시 즉시 삭제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해당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막는 효과는 있음
- 그러나, 복제와 유포가 용이한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불법촬영물 등의 영상이 타 플랫폼에도 쉽게 유포될 수 있는데, 즉시 삭제될 경우 해당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영상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불법영상물의 특징정보를 수집하여 원본DB에 추가할 수 있어 복제물과 변형물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함
- 국내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의심되는 영상 및 정보에 대해서 NCMEC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로 의심되는 영상 및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지시 직접 NCMEC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접수된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정보가 NCMEC에 누적되어 타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 동일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함

○ (해결방안)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조치의무사업자)에게 삭제요청을 받은 신고영상 및 필터링 검출 영상을 바로 삭제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에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삭제요청을 받은 신고영상 및 필터링 검출 영상을 바로 삭제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달을 의무화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모니터링 역량 강화

<표 4-19> 불법촬영물 의심 영상의 방심위 전달 후 삭제를 위한 고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신고 · 삭제 요청의 처리)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 삭제 요청의 처리)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해당 영상물을 전달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적용 결과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라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적용 결과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즉시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만약,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라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디지털성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양형기준 수립

○ (목표) 생성형AI기술의 음란물 이용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및 유포 피해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요구를 반영하고, 디지털기술의 빠른 전파속도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 기준 수립

ㅇ (현황)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를 불법촬영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처벌하는 한계가 있고, 영리목적의 반포 관련 기본양형의 하한이 2년6개월로 지정되어 2차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등의 경미한 처벌 우려가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 및 제14조의2의 신설로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2020년 3월24일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편집·반포 관련 범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특히, 영리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됨
- 이후 2020년5월19일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개정되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 등에 관한 법정형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영리 목적 반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됨
- 또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 유포 관련 범죄는 그 죄질을 제작 등과 유사하게 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제110차 회의에 이를 반영하여 유포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한 바 있음(양형위원회, 2020. 4. 20., 김재한, 2022. 재인용)

<표 4-20>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정형 기준

구분		조항	법정형	기본형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무기징역,5년↑징역	5년~9년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5년↑징역	4년~8년
	배포 등		3년↑징역	2년6월~6년
	아동·청소년 알선		3년↑징역	2년6월~6년
	구입 등		1년↑징역	10월~2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8월~2년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1년~2년6월
	영리 목적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	3년이상의 유기징역	2년6월~ 6년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	3년이하의징역, 3천만원 이하의벌금	6월~1년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편집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	5년이하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6월~1년6월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2항		6월~1년6월
	영리 목적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3항	7년이하의 징역	1년~2년6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	1년↑징역	1년~3년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2항	3년↑징역	3년~6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징역 2천만원↓벌금	4월~10월

○ (해외사례) 편집이나 딥페이크 등을 통해 허위로 조작된 성착취 영상과 이미지등의 배포를 통해 피해자로 오인하게 할 경우, 실제 촬영한 불법촬영물의 배포와 동일하게 취급함

- 해외의 경우에도 딥페이크에 특화된 처벌규정이 마련하거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소지를 불법촬영물의 제작·소지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드묾
- 다만 편집이나 딥페이크 등을 사용하여 조작한 허위조작 성착취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실제 피해자를 촬영한 불법촬영물 영상을 배포한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호주 온라인 안전법」 2021(Cth)(OSA) 제15조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한 개인을 묘사하거나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친밀한 이미지(Intimate Image)’로 정의하고 동의없는 유포나 유포협박 등을 이미지 기반 학대로 판단하고 있음
- 호주의 온라인 안전국은 이미지 기반 학대(image-based abuse)의 정의에 ‘변조 또는 허위(altered or faked) 등을 통해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와 동등하게 해석함(eSafety Commissioner, 2023. 10. 23.일 접속)

- 마찬가지로 「호주 형법(Crime Act 1900)」에 딥페이크 관련 조항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로 오인하게 하여 피해자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딥페이크 영상 유포도 비동의성적영상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음(Technology Safety Australia, 2023)

ㅇ (문제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피해자의 실제 신체가 촬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실질적인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반포에 관한 엄중히 처단 필요

- 우리나라도 허위영상물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과 반포, 영리목적의 반포 등의 법적 형량을 높임
- 이로 인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과 반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의 반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설정됨
- 그러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에 관한 범죄의 형량이 상향되면서 허위영상물 등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과의 격차가 발생함
- 결과적으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영상물은 실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겪는 사생활 침해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마저도 불법촬영물과 비교해 실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폄하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생성형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영상물의 표현만으로는 영상의 허위 여부를 점점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나 피해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이나 다름없이 실제적임(오선희, 2022. 6. 26.; 박고은, 2022. 6. 26., 재인용)
- 특히, 생성형 AI기반의 어플리케이션과 라이브러리 등이 다양해지면서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물 유포 가능성이 크게 증가함
- 누구나 쉽게 AI학습모델과 학습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매체 환경에서, 피해자와 물리적인 접촉이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가 피해자의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 AI학습을 통해 쉽게 성적 영상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AI를 이용해 2,000여장의 미성년자와 연예인의 허위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과 해외사이트에 5,800여회에 걸쳐 유포한 범죄자가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기소되는 사건(뉴시스, 2023. 9. 8.)이 발생한 바 있으며, 생성형AI모델 공유사이트 '시빗AI(CivitAI)'에서 K팝 걸그룹 멤버 사진을 대량으로 도용해 학습시킨 AI모델 데이터가 유통(서울신문, 2023. 6. 27.)되는 등, 국내에서도 생성형AI를 이용한 성적 영상의 제작과 유포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실제로 2021년도 기준 딥페이크 위주의 포르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영상의 25%가 K-팝 걸그룹 멤버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박은주, 2023. 10. 17.)
- 이와 같이 생성형AI를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이 쉬워지고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실제 촬영한 영상과 허위로 편집된 영상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적인 수준으로 묘사가 가능해짐
- 과거와 달리 사실적인 묘사가 포함된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제작·유포 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김병욱·민형배 의원실이 공개한 성적 허위영상정보 처리 현황(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3, 송현수, 2023. 10. 9., 재인용)을 보면, 성적 허위영상정보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3,574건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2023년도는 8월에는 이미 전년도 수준인 3,046건의 심의가 접수되어 접속차단이 이뤄지기도 함
- 허위조작 영상물 반포의 경우 6월부터 2년6개월로 기본양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보통 1년 이하면 단독, 1년 이상이면 합의부 재판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죄의 경중을 고려하는 국내 법의 특성상 최소기준이 1년 미만인 6월이라는 것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는 낮은 처벌임
-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반포의 경우 기본양형의 최소가 2년6개월인데 이 경우 3년 미만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 형량의 범위가 넓다는 문제가 있음

- 허위 영상물의 영리목적 반포의 경우 기본양형의 최고가 2년 6개월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범죄를 가볍게 다루는 문제가 있음

<표 4-21>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표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편집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반포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협박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보통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 징역이 기본 형량인데, 2차피해가 우려되는 반포에 대한 처벌형량이 낮다는 것은 우려스러움
- 따라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허위영상물에 관한 영리목적의 반포에 대해서는 모두 기본 형량의 하한을 3년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해결방안)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의 법정형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 관련 성범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반포와 영리목적의 반포 관련 기본 양형 하한선 상향 등을 통해 합의부 재판에 배속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른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엄중 처벌함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기본양형 하한선 상향(현행 6개월→ 1년)하여, 허위영상물의 편집과 반포의 경우에도 합의부 재판에 할당되도록 함

- 단독이나 합의부에 따라 재판과정에 특정인에게 유불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민의 법감정상 사법부에 대한 판결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고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관대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합의부 재판 배속이 필요함

- 한국리서치(2020)가 발표한 '판결의 온도차-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고, 88%가 불법촬영, 음란물유포,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의 처벌수준이 낮다고 인식함

- 양형기준 상 감경범위를 선택한 이후에도 판사가 적량감경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특성상 '권고형량범위'가 국민 법감정에 비해 넓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유포 등에 관한 사건을 합의부에 배속함으로써, 처벌의 비일관성과 불확실성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 제고가 필요함

- 합의부의 심판권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를 모두 합의부 재판에 배당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4조의2를 포함하는 하위조항을 신설할 경우 합의부 재판에 배속이 될 수 있음

<표 4-22>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 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 · 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 · 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4조의2 관련 영리목적의 반포에 대해 기본양형의 하한선을 상향하여, 집행유예 등으로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함

-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관련 영리 목적의 반포는 현행 2년6개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관련 영리목적의 반포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집행유예 등으로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함

바. 디지털성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

○ (목표)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의 증거가 확인되면 영장없는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함으로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ㅇ (현황) 「형사소송법」상 영장없는 압수·수색의 근거조항이 있으나, 영장없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로 한정함에 따라 피의자가 제출한 전자정보매체로부터 발견한 타 디지털성범죄의 증거를 영장없이 압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제200조의3), 현행범 체포(제212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장없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제108조) 등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가 가능
-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제106조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음

<표 4-23>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 제200조의3 ·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ㅇ (문제점) 디지털성범죄 증거 발견시 즉각적인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의 영장기반 압수수색 방식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어려움

-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성범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어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매체 등으로부터 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증거가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나 현행 법령은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을 전제로 하는바 임의제출한 전자정보 매체로부터 발견한 타 디지털성범죄의 증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타 범죄혐의의 증거에 대해서는 몰수·폐기가 제한되어 피의자에게 반환되어 복원 및 재유포 우려가 있음
- 디지털성범죄의 특성 상 불법 영상의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유포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증거의 삭제도 용이하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증거 발견시 즉각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비물리적 공간에서 저장되는 디지털증거가 빨리 소멸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관련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함
- 그러나 현행 법은 영장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영장발부 없이 증거물을 수색하거나 압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영장발부 절차 자체를 디지털화해야하는데 아날로그식 영장 발부로 인해 신속성이 떨어짐
-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탐색하던 중 다른 피해 영상물을 발견했을 때에도 압수의 효력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범위에만 미치므로, 별건 피해 영상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 디지털정보의 경우 삭제와 증거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별도 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증거 인멸·소실 우려 있음
- 따라서, 체포·구속이 수반되지 않고, 범죄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긴급 압수수색 제도의 도입이 필요
-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제9차(2022년 1월 27일)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압수·수색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ㅇ (해외사례) 미국,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인신구속과 별개로 당해 또는 별건 사건의 증거에 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접근하여 명백함 범죄 증거물을 확인했

을때에는 영장없는 압수가 가능하여 증거능력이 확보됨

- 또한 미국은 집행유예, 가석방 후 보호관찰, 감독조건부 석방 대상자들 중에서 성범죄로 유죄 인정된 대상자에 한해 양형지침서에 따른 특별준수 사항으로 "불법적 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영장없이 대상자의 신체, 소지품, 집, 컴퓨터 기타 전자통신기기, 데이터 저장장치 또는 미디어 등에 관해 수색(법무부, 2022, P.122)"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 관련 증거물의 취득이 용이함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수색 중에 발견된 다른 범행의 증거물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함

<표 4-24> 해외의 영장없는 압수수색 허용여부

국가	영장없는 압수수색 허용여부
미국	영장주의 예외로서 명백한 목적의 원칙(Plain view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진입하여 소재하는 장소에서 자연적 시야에 들어온 명백한 범죄 증거물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독일	형사소송법에 '독립적 가압수' 규정을 두어 적법한 수색의 기회에 우연히 발견된 피의자 또는 제3자의 다른 범행의 증거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관의 압수명령 없이 잠정적으로 압수 가능
오스트리아	독일과 유사하게 형사소송법에 수색의 기회에 발견된 다른 범행의 증거물을 압수영장 없이 보전할 수 있음

출처: 법무부(2023). P.168

ㅇ (해결방안)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긴급 온라인 압수수색 제도 도입

- 「성폭력처벌법」 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청소년성보호법」 상 제11조(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등에 대해 온라인수색 및 사후영장 제도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 독일의 경우 온라인 수색을 위해서는 영장 신청, 사후적 검토, 법원 보고 등의 3차례에 걸친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기 때문에 사법부와 국회가 검토하는 투명한 운영이 가

능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우려는 매우 낮음

- 온라인 수색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방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함
- 영장 또는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 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발견된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영장 없이 신속히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이 추구하는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요건 설정과 사후영장 발부 등 현행 법체계에 적합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함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정보 선삭제·후소명

○ (목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정보 유포 방지를 위한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함

○ (현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심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제3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한 정보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신속한 삭제를 강제하는 조항이 부재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는 피해자의 인적정보 관련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현행 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에 따라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요청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침해를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권리자의 정보 삭제의 신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나 명예훼손에 등 권리침해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삭제 및 반박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 성폭력 피해자는 인적정보나 사생활 침해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되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 성폭력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경과 및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받을 수 있으며,
-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음
- 이때 동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른 삭제는 '침해를 받은 자'의 정보 삭제요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침해사실을 확인하고 게시자의 소명에 따른 조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최소 5일 이상)이 소요되며 반드시 '침해를 받은 자'인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함

<표 4-2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

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ㅇ (임의의 임시조치) 제3자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당한 권리 침해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보다는 동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4-2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시정요구가 아닌 일반 민원인으로부터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인적정보 삭제요청을 접수받았을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현행법령상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또는 선제적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제44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경우에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임의의 임시조치로 인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될 때는 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가 없음
- 이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일반적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별도

절차를 강제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현행법에서는 피해자나 제3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즉각적인 삭제를 기대하기 어려움

ㅇ (해결방안1-소명절차없는 임시조치 허용) 망법 제44조의2 개정으로「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피해소명사실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

- 성범죄피해와 관련한 인적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을 선조치하고 소명 후 제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선조치를 의무화

- 선조치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받은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신속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심의 결과에 따라 임시조치 해제 여부 등의 후속 조치 실시함으로써 임시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함

<표 4-27>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중간생략> ⑤ <신설> <이하 생략>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중간생략>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이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 신고에 해당할 경우,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없이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해결방안2-임의의 임시조치 확대) 망법 제44조의3 개정으로 제3자의 신고를 통해서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가 접수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당한 피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위하도록 함

-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제3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한 불법촬영물 등과 연관된 피해자의 신원정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해가능성을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자체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과 구분하여 성범죄 피해자 관련 개인정보와 사생활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임의의 임시조치 의무에 대한 조항 마련이 검토되어야 함

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

○ (목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금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함으로써, 피해 영상물 삭제 비용, 생계비 등 실질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충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 촉진

ㅇ (문제점) 피해 영상물 삭제, 심리 치료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범죄수익 환수금이 피해자 지원에 직접 사용될 수 없는 현행 피해자지원기금 체계로 인해 필요재원 확보가 어려움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이 아니므로 피해자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 및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지원기금을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현행법상 범죄수익 환수금은 법무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이를 바로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범죄수익이 환수되더라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정마련에는 어려움
- 또한, 불법촬영물 유포의 특성상 피해자가 오랫동안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발생일로부터 10년 이후에도 재유포 피해 지속되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한정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 피해현실에 부합하지 못함
- 이에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금이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 수익으로 피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환수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P.170)

ㅇ (해결방안) 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독립 예산 편성 및 ② 성범죄 피해자의 치료비 및 경제적 지원신청기한을 폐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함

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독립예산 편성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항목 별도 편성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추가 사업 편성, 안정적 재원을 확충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의 별도 편성이 가능해지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와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환수율을 100%까지 상향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 및 경제적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업에 할애하는 방안을 추진 필요

② 지원신청기한 폐지

-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2)에 한해 피해자 보호 지원 신청기한 제한 폐지하는 등 현행 치료비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10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제적 지원을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함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강화 방안

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체용어 발굴 및 확산

ㅇ (목표)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야기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용어 사용 확대

- 성범죄에 대한 판단기준이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4-28>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체용어 발굴

목표	세부 추진 과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체용어 발굴	-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보호하고 가해행위 위주의 객관화된 대체 용어 발굴

ㅇ (현황) 「성폭력처벌법」의 디지털성범죄의 형사책임 조건에 피해자의 피해감정 중 하나인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다양한 피해감정을 소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 우려가 있음

<표 4-29> 「성폭력처벌법」 상 디지털성범죄 관련 표현 현황

구분	디지털성범죄 관련 표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국내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법령상의 성범죄를 지칭하는 용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음
- 대표적으로 2020년 6월에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한 바 있음
-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조항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적 특성을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으로 정의하고, 이때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피해감정

중심의 표현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임

<표 4-30>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4.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 · 청소년, 아동 ·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커뮤니티 규정에서 발견되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가해자 중심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 McGlynn & Packley (2016)은 형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희망으로 특정 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나 업스커트(upskirt)등의 용어를 대체하여 디지털성범죄에게 올바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ㅇ (해외사례) 해외에서도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예도 있으나 잘못된 용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 뉴욕주의 뉴욕시민권법(New York Civil Rights Law § 52-C.)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없는 성적 묘사의 불법적 배포(unlawful dissemination or publication of a sexually explicit depiction of an individual)로만 설명되어 있으며, 동의여부와 성적으로 노골적인지(sexually explicit)의 여부만을 성립요건으로 정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에 대한

설명은 부재함

- 영국의 경우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한 규율을 형법 및 법원조직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33조에서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민을 유발할 의도로 사적인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Disclosing private sexual photographs and films with intent to cause distress)"로 정의함
- '고민(distress)'라는 표현이 국내의 '성적 수치심'에 비해 완곡한 표현이기는 하나,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범죄성립요건으로 오해될 수 있어 부적절함
- 이에 따라 영국 내에서도 비동의 사적·성적 이미지 제작 및 배포(non-consensual creation and/or distribution of private, sexual images)를 통칭하는 이미지기반 학대(image-based sexual abuse)라는 용어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임(McGlynn & Packley, 2016)
- 호주의 경우, 온라인안전감독위원회는 리벤지 포르노 용어에 대해서 사이버 착취, 합의되지 않은 포르노(NCP), 은밀한 이미지의 동의없는 공유 등의 다른 용어들을 제안한 바 있으며, 공식적으로'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로 대체함(eSafety Commissioner, 2017)
- 호주 연방 형법(Criminal Code Act 1995)은 불법촬영물 등을'사적인 성적 자료와 관련된 범죄(offences involving private sexual material)'라고 부르며, '사적인 성적자료(private sexual materials)'는 합리적인 사람이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된다고 간주하는 상황에서 성적인 포즈나 행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로 정의하여 성중립적으로 표현함
- 해외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은 성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확산하고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홍콩에 본부를 둔 자선단체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협회(ACSVAW:Association Concerning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사우스아프리카의 진보적인 커뮤니케이션 협회(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미국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시민단체인 사이버시민권

이니셔티브(CCRI: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s) 등의 시민단체들은 불법촬영물을 지칭하는 용어인'리벤지 포르노'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선동하여 복수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노골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음란물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Hanifa, 2022. 3. 21., Maddocks, 2019)

- ACSVAW와 CCRI는 McGlynn et al.(2017)이 제한한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image-based sexual abuse)'를 대체 용어로 제안한 반면, APC는 '은밀한 이미지의 비동의적 배포(NCII:non-consensual dissemination of intimate images)' 대체용어로 제안함

ㅇ (용어의 부적절성)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성립요건에 '성적 수치심' 표현이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성범죄 처벌 법률 또는 판결문에 피해자의 피해감정 중 하나인'수치심'을 주된 이유로 적시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범죄 성립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 · 분노 · 비현실감 · 죄책감 · 무기력 등의 다양한 피해감정을 소외시킴(김혜진, 2020;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2022)
- 이에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법무부, 2022. 3. 24.)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용어로 제안 법무부 전문위가 「성폭력처벌법」 등에 명시된 피해자 중심의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대체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음(법무부, 2022. 3. 24.)
- 최근의 대법원에서도 성폭력 처벌 법령상 '성적수치심'의 용어의 한계를 넓히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어, '성적수치심'을 기존대로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함
- 대법원은 2022년 1월 이른바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함한다"며 피해자의 다양한 피해 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넓혀 해석한 바 있음

- 대법원은 가해자가 2018년 5월에 대중교통에서 몸에 붙는 레깅스 의복을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약 8초간 촬영한 사건이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판단함
- 이 사건의 쟁점은 일상복인 레깅스를 입은 신체를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음
- 2심은 피해자가 "기분이 더럽다"고 한 표현에 대해 성적 수치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됐다는 분노"도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무부가 운영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명시된 피해자 중심의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대체하라고 법무부에 권고(2022. 3. 24.)한 바 있음

○ (용어 발굴) 성범죄 피해자와 상담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 등 현행 법령상 성범죄 관련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용어를 발굴

-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성립요건에 '성적 수치심' 표현이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문제
- 최근의 사회적 인식 변화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볼 때에도 성범죄 피해를 협의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반영한 용어 개정이 필요함

<표 4-31>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성폭력처벌법」상 '성적수치심' 등 용어 개정안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권고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피해를 규정하는 적절한 대체

용어를 발굴하고, 현행 법령과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대신에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용어로 제안함으로써,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용어를 제안함

-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용어 대신에 가해행위 위주의 대체용어를 마련함으로써, 성범죄 구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기대됨
- 「성폭력처벌법」 등에 명시된 피해자 중심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표현의 대체용어 마련을 통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범죄피해 회복 등 치료적 사법 실현 효과 기대

ㅇ (법령 개정)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성범죄 처벌 관련 법령에 담긴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중립적 표현으로 대체

- 성범죄 처벌 관련 법령에 담긴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성 중립적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또는 '성적 불쾌감' 등으로 대체
- 이외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규정 등에서 '성희롱'을 '성적괴롭힘' 등의 성중립적 용어로 대체가 필요함

<표 4-32> 성범죄 피해관련 용어 대체가 필요한 법령 범위

구분	개정 대상 법령
'성적수치심' 대체	● 성범죄 관련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및 제14조의3 -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수사 및 형 집행 관련 규칙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6조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성희롱' 대체	● 법령 -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이외에도 각 기관별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나. 방송보도·영상재현 윤리원칙 수립 및 확산

○ (목표) 언론인, 방송종사자, 영상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성범죄 사건 보도 및 방송재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성범죄 피해에 대한 부적절한 묘사를 방지

○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에 대한 피해자인권보호 규정이 마련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금함

<표 4-3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①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언론도 자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을 마련하여, 사건보도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사생활을 보도하는 세부권고 기준을 공개함

<표 4-34>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세부권고 기준 중 '잊힐 권리'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세부 추진 과제
피해인식 관련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원치않는 성적언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을 침해당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바라보고 사건을 보

	도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 주변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실명으로 '○○○ 사건'이라고 부르는 등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생활 보호 관련	-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대체용어관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는다.

○ (문제점)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방송인 등의 인식 부족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언론보도, 방송재현 등을 통해서 성범죄 피해에 대한 묘사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 성폭력 범죄보도나 방송재현 영상 등에서 성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화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함

- '20대 남성', '20대 친딸', '30대 여교사' 등 연령이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노출하거나, '걸그룹 연습생', '뮤지컬 배우', '여대생', 등 직업을 묘사하거나, 성범죄가 발생한 지역이나 직장 정보를 공개하거나,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등 불필요하게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 문제가 되고 있음

- 방송심의규정 및 성폭력 범죄보도에 관한 윤리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서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성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과 성범죄 피해자의 거주지역이나 외모, 연령, 직업 등을 특정화할 수 있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2차 피해 유발 보도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론계 내부 자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인식 개선의 과정이 없었다(조선희, 2022)"는 내부적인 평가가 있음

○ (해결방안) 언론보도, 방송재현, 온라인 영상이나 게시물 등을 통해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 성범죄 피해 규정 및 묘사에 관한 보도 및 방송

재현 윤리원칙을 마련하고, ② 방송 및 언론인, 크리에이터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및 ③ 2차 가해 경각심 제고 및 인식개선 공익광고를 집행함

<표 4-35>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체용어 발굴 및 확산 방안

구분	세부 추진 과제
방송보도 및 영상재현 윤리원칙 마련	- 성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송윤리 원칙 마련
언론·방송·크리에이터대상 인식개선캠페인	- 방송 및 언론인, 크리에이터 성범죄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디지털성범죄피해 사건 보도 및 방송재현 사례집 및 가이드 제작·배포
2차가해 경각심 제고 및 인식개선 공익광고·교육 실시	-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한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인식개선 공익광고 집행 - 인터넷 이용자,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성범죄 2차가해 방지 관련 피해자 인권 보호 교육 및 인식 개선 교육

① 성범죄 보도 및 영상재현 윤리원칙 마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실제 방송보도 및 영상재현 등의 실무에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범죄 보도 및 영상재현 윤리원칙과 실천요강을 마련하여 배포함

  *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을 참고하되, 방송영상매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상묘사 및 음성표현, 대역사용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포함

② 방송/언론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방송, 언론, 크리에이터, 대국민 대상으로 사건보도, 영상재현, 댓글 등을 통해서도 디지털성범죄 2차 가해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2차가해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용어 대신에 가해행위 위주의 대체용어 발굴 및 올바른 용어 확산 캠페인 실시
-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커뮤니티 규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용어를 발굴하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커뮤니티 규정에 가

해자 중심의 용어인 ‘성적 수치심’ 사용 제한 권고

-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나 부적절한 표현, 묘사 등에 대한 사례집 발간 및 올바른 용어에 대한 가이드를 제작·배포

③ 인식개선 공익광고 집행

- 언론사·방송사에 소속되지 않은 동영상공유사이트 및 SNS에서 활동하는 독립된 영상물 크리에이터가 성범죄·성희롱 관련 사건을 취재하여 유사보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성희롱 사건 취재 및 묘사, 재현 등과 관련한 피해자 인권 보호 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한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하는 인식개선 공익광고를 집행하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2차가해 방지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미디어역량 교육을 실시함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강재구 (2022. 2. 4.), [단독] 네이버, ‘박사방’ 조주빈 옥중 운영 블로그 차단-범죄 조장 ·용인 우려 등 네이버 운영정책 위반 검토,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757.html

관계기관 합동 (2022. 1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안).

김민지 (2023),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항의 입법 평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35호, 2023 · 가을)

김영철, 조현욱(2016).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대법원2014.7. 24. 선고 2014도6309판결, 법학연구 제57권 제3호.

김재한(2022). 불법촬영물의 제재방안에 대한 고찰- 행위유형에 따른 기준제시를 중심으로 -, 刑事政, 제34권 제3호(통권 제71호 : 2022. 10.)

김혜진 (2020)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국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미국, 영국, 호주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0호

뉴시스 (2023. 9. 8.), 美서 '연예인·아동 딥페이크' 5800회 유포한 30대 국내 압송, 뉴시스

뉴시스 (2020. 10. 27.), “불법촬영물 가해자 삭제비용 청구 ‘0건’…인력 60%는 경력 3개월↓”,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1650&cID=10201&pID=10200

리얼리서치코리아 (2023). ‘디지털 잊힐 권리’와 관련한 설문조사, (이코리아뉴스, 2023. 5. 10. ‘디지털 잊힐 권리, 모두에게 필요하다[선진국입법사례], 재인용)

박고은 (2022. 6. 26.) 딥페이크 처벌법 시행 2년, 가해자들은 ‘아는 사람’을 노렸다, 한겨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23). 성적 허위영상정보 처리 현황, (송현수, ‘딥페이크 음란물 3년간 9000건 시정 요구…삭제는 5%도 안돼’, 부산일보, 2023. 10. 9., 재인용)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2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2022. 12. 7). 보도자료-‘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잊혀질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힘 모은다.

보안뉴스(2023.10.17.), ‘[알쓸보안사전] 딥페이크 공격, AI로 합성한 얼굴이 포르노에?’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22512&kind=1

배상균 (2016).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법무부 보도자료 (2022. 3. 24.). 『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8차 권고 발표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82/557569/artclView.do

법무부 보도자료 (2022. 1. 28)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 발표, https://www.moj.go.kr/bbs/moj/182/555913/artclView.do

서울신문 (2023.06.27.) AI가 만든 걸그룹 합성사진... 음란물 악용 가능성 우려, 서울신문. https://m.news.nate.com/view/20230627n12966

손헌·김태열 (2016).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범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이슈브리프, Vol, 16. p.4.

양형위원회, 제101차 정기회의 전문위원 업무보고, 2020. 4. 20, 11-12면.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21). 울산시민의 디지털성범죄 인식 및 정책방안, 2021 울산여성가족 브리프, vol. 25.

이원상 (2023),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정비방안’, 형사법 연구 제35권 제호(2023 봄)

조선희 (2022). 인터뷰, (김민주(2022. 8. 23.),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 자극적 보도...“피해자 성별·상황 묘사 중심 서술 그만”, 재인용)

채윤정 (2019. 02. 13.),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구상권 행사, 지난해 9월 첫 시행 이후 한 건도 없어”,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634

최윤아 (2022. 6. 18.), 『성범죄 피해는 평생 간다고? 뭐라도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한겨레.

최윤아 (2022. 6. 28.), 『‘누구나 100만원’인데 10년간 단 65건뿐인 신고포상금 제도는?』, 한겨레.

최호진, 허정현(2020).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 법학논

총 제44권제1호.

최현재 (2020. 3. 29.),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구상권 청구 쉽지 않네”, 매일경제, https://www.mk.co.kr/ news/society/view/2020/03/324477/

한국리서치(2020). ‘판결의 온도차-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디지털 성폭력피해지원 안내서: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202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제53호(2020. 4. 24.)

해외 문헌

eSafety Commissioner(2017). “Revenge porn,“ by another name, https://www.esafety.gov.au/newsroom/blogs/revenge-porn-another-name

Hanifa, T., (2022. 3. 21.)Call a Spade a Spade: Why the Term “Revenge Porn” is Misleading, Green Networks, https://greennetwork.asia/featured/call-a-spade-a-spade-why-the-term-revenge-porn-is-misleading/

Maddocks, S. (2019). “Revenge porn“: Five important reasons why we should not call it by that nam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https://www.apc.org/en/news/revenge-porn-five-important-reasons-why-we-should-not-call-it-name

McGlynn, C., & Rackley, E. (2017). Image-based sexual abus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7(3), 534-561.

McGlynn & Packley (2016) Image-based sexual abuse: More than just ‘revenge pornography’, https://claremcglynn.files.wordpress.com/2015/10/imagebasedsexualabuse-mcglynnrackley-briefing.pdf

Meta (2019. 3. 15.). Detecting Non-Consensual Intimate Images and Supporting Victims, https://about.fb.com/news/2019/03/detecting-non-consensual-intimate-images/

eSafety Commissioner(____). Image-based abuse, https://www.esafety.gov.au/key-topics

/image-based-abuse#what-is-image-based-abuse-or-revenge-porn (2023. 10. 23. 접속)

Technology Safety Austalia(2023). Legal Guide to Image-Based Abuse Legislation in NSW, https://techsafety.org.au/blog/legal_articles/legal-guide-to-image-based-abuse-legislation-in-nsw/

웹사이트

네이버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의 게시물 운영정책, https://policy.naver.com/policy/service_group.html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메타의 투명성 센터, https://transparency.fb.com/ko-kr/policies/community-standards/adult-nudity-sexual-activity/

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https://help.instagram.com/477434105621119/?helpref=uf_share

트위치 이용약관, https://www.twitch.tv/p/ko-kr/legal/terms-of-service/

트위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https://safety.twitch.tv/s/article/Community-Guidelines?langu age=ko

카카오 운영정책, https://www.kakao.com/policy/oppolicy

페이스북 고객센터, 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207005222725325?paipv=0&eav=AfYvfWTc

호주 온라인 안전법,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1A00076

호주 사우스웨일즈주 기준 형법, https://legislation.nsw.gov.au/view/whole/html/inforce/current/act-1900-040

호주 사우스웨일즈주 이미지 기반 입법 가이드, https://techsafety.org.au/blog/legal_articles/legal-guide-to-image-based-abuse-legislation-in-nsw/

호주 Capital Territory 기준 형법 https://www.legislation.act.gov.au/View/a/1900-40/current/html/1900-40.html

●저 자 소 개●

천 혜 선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뉴욕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윤 금 낭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박사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이 현 주

· 서울여자대학교 영어영문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조지아주립대학교 저널리즘 석사
· 뉴욕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 나 은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원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CC-2023-2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23년 12월 31일 인쇄
202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